

최종 보고서

---

#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

2018. 2.



---

## 제 출 문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2

(사)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진혁

---

---

## 연구진

---

연구책임: 하혜수(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연구원: 김철회(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 <목 차>

I.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
II. 경상북도 국제교류의 현황 분석 .....	3
1. 지자체 국제교류의 의의와 유형 .....	3
2. 지자체 국제교류의 특징과 문제점 .....	7
3. 경상북도 국제교류 현황 및 주요사업 .....	9
III. 타 지역 국제교류기관 사례 .....	13
1. 부산국제교류재단 .....	13
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	24
3. 광주광역시 국제교류센터 .....	33
4.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	42
5. 국내사례의 시사점 .....	50
IV.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 타당성 검토 .....	56
1. 법적·제도적 타당성 .....	56
2. 사회적 타당성 .....	59
3. 이론적 타당성 .....	62
V.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 방안 .....	65
1. 설립 기본 계획 .....	65
2. 1단계 사업 구상 .....	70
3. 2단계 사업 구상 .....	81

VI. 요약 및 결론 .....	86
1. 요약 .....	86
2. 결론 .....	87
참고문헌 .....	89
붙임 1.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90
붙임 2.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92
붙임 3. 재단법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정관 .....	94

## <표 차례>

<표 II-1>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목적 .....	4
<표 II-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유형 .....	6
<표 II-3>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결연 현황 .....	10
<표 III-1> 일본의 지역국제교류협회 현황 .....	13
<표 III-2> 부산국제교류재단 조례의 주요 내용 .....	14
<표 III-3> 부산국제교류재단 인력 규모 .....	16
<표 III-4> 부산국제교류재단 연도별 세입세출 규모 추이 .....	16
<표 III-5>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시 출연금 추이 .....	17
<표 III-6> 부산국제교류재단 시설 현황 .....	18
<표 III-7>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사업 .....	18
<표 III-8> 부산국제교류재단 주요 사업 현황 .....	20
<표 III-9>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인력현황 .....	27
<표 III-10>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주요업무 .....	28
<표 III-11>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	29
<표 III-12>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세입예산(2016년) .....	37
<표 III-13>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세출예산(2016년) .....	38
<표 III-14> 광주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	39
<표 III-15>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력현황 .....	43
<표 III-1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예산규모(2016년도) .....	44
<표 III-17>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주요 사업 .....	45
<표 III-18>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 규모 비교 .....	50
<표 III-19>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 기능 비교 .....	51
<표 III-20> 경상북도 시·군별 외국인 수(2016년) .....	54
<표 III-21> 대구시 구·군별 외국인 수(2016년) .....	54
<표 III-22> 경상북도 시·군별 대학 및 대학생 수(2015년) .....	55
<표 IV-1> 경상국제교류센터(가칭) 설립 절차 .....	57
<표 IV-2> 경상북도 국제교류사업 추진주체의 대안별 비교 .....	64
<표 V-1> 경상북도공공외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66

<표 V-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67
<표 V-3> 부산광역시 및 전라북도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68
<표 V-4> 재단법인 설립 절차 .....	69
<표 V-5> 팀별 주요 업무 .....	74
<표 V-6>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 정원 계획(명) .....	75
<표 V-7>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봉(2018년 기준) .....	76
<표 V-8>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의 연간 소요 예산(1안 - 정원 13명) .....	77
<표 V-9>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의 연간 소요 예산(2안 - 정원 10명) .....	77
<표 V-10> 연차별 채용 계획(1안 - 정원 13명) .....	78
<표 V-11> 연차별 채용 계획(1안 - 정원 13명) .....	78
<표 V-12>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사무실 구성(안) .....	79
<표 V-13>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중장기 인력 계획(안) .....	85



## <그림 차례>

<그림 Ⅲ-1> 부산국제교류재단 조직도 .....	15
<그림 Ⅲ-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설립목적 .....	24
<그림 Ⅲ-3>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조직도 .....	27
<그림 Ⅲ-4> 광주국제교류센터의 비전 .....	33
<그림 Ⅲ-5> 광주국제교류센터 조직도 .....	36
<그림 Ⅲ-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조직도 .....	43
<그림 V-1>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비전 및 전략체계 .....	72
<그림 V-2>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조직 구조(안) .....	74
<그림 V-3>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비전체계 변화 .....	83
<그림 V-4>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2단계 조직 구조(안) .....	84

# I.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 ㉠ 연구의 필요성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국제교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제교류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등의 형태로 국제교류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음
- 국제교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 비전 및 전략 부족, 국제교류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법적·제도적 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특정 이벤트 중심, 혹은 단체장 등 일부 인사들의 관심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장기 전략 없이 단기교류의 특성을 보임
  - 영어 이외의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 교류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 부족, 순환보직 등으로 담당부서의 전문적 역량 미흡
  -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국제교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체계 미흡
  - 또한 지자체 국제교류가 대부분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지자체에 의한 수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경상북도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국제교류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수원 등의 지자체에서는 국제교류기관을 설립하여 시민국제화사업, 국제교류사업, 외국인지원서비스, 국제화네트워킹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②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국제교류기관 설립 및 운영관련 사례의 검토 등을 통해 경북도의 국제교류기관 설립 타당성과 함께 운영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대상으로 국제교류기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업무와 통상지원 업무를 동일한 과에서는 수행하고 있으나, 통상지원 업무의 경우 지자체 산하에 관련 기관들(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상북도 국제교류의 현황 분석
    - 국내 타 지역 국제교류기관 사례 분석
    -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의 타당성 검토
    -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 방안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 사례분석, 관계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진행
  - 문헌조사는 기존 지자체 국제교류협력의 실태와 관련된 연구, 지자체 국제교류센터 설치 관련 연구 등을 중심으로 고찰
  - 타 지역 사례는 부산, 대전, 전북의 국제교류기관을 대상으로 설립 배경, 연혁, 기관 현황, 주요 기능 등을 분석
  - 인터뷰는 관계 공무원, 국제교류기관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
- (연구 기간) 2017. 11 ~ 2018. 2월

## II. 경상북도 국제교류의 현황 분석

### 1. 지자체 국제교류의 의의와 유형

#### ㉠ 지자체 국제교류의 의의

- (의미) 국제교류는 양국 간의 수평적 쌍방향 흐름으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우호,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의미(신승수, 2005)
  -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국제교류는 대부분 외교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국제통상이나 외교관계를 넘어서 그 개념이 다양하고 폭넓게 변화하고 있음
  - 하지만, 국가수준의 국제교류는 정책의 수립과 전개에서 유연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가 요구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지자체 국제교류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다소 정의가 나누어지고 있으나, ‘언어, 인종, 이념, 체제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간에 우호적으로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 주체 간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협력관계를 의미(김판석, 2000)’
- (목적) 지자체 국제교류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주체적인 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행정기술의 도입과 지역공무원 행정능력 향상을 통해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경제교류 협정 및 해외시장개척 등의 경제통상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
  - 또한, 세계화 속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이러한 국제교류의 일반적 목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5)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II-1>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목적

구분	목적
국제협력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협력 공감 대 형성</li> <li>○ 국제흐름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개혁</li> <li>○ 해외연수·견학·시찰 등을 통한 견문 확장 및 개방적 세계관 도모 등</li> </ul>
행정선진화 및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된 선진행정과 선진제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li> <li>○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쌍방향 상호협력 체제 구축</li> <li>○ 지방과 도시의 국제화 기반 조성 및 내부수용능력과 국제적 역량 향상 등</li> </ul>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li>○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기관의 국내 활동 지원 우수기술, 해외자본, 우수인재 유치 등</li> </ul>
공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공동관심사(환경, 보건, 안전 등)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li> <li>○ 자치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 활동 증대</li> <li>○ 국가 외교의 보완 및 지방차원 지역외교 증진 등</li> </ul>
문화이해 및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문화 이해와 자국문화 자긍심 고취</li> <li>○ 지역정치행정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정보의 수집 등</li> </ul>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5)

## 2] 지자체 국제교류의 유형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일반적인 형태는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으로 이는 국제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자매결연) 기본적으로 국내 자치단체와 해외 자치단체 간 상호이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포괄적인 교류로 중앙정부에서 국제교류가 외교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매결연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
  - 자매결연은 국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간 일정기간 교류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약속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37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사항임
  - 자매결연은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간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우호교류)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서 향후 교류추진에 대한 예고로 자매결연처럼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매결연과 동일한 절차로 추진됨
  -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시간적 흐름으로 볼 때 자매결연은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체결되는 보다 구체적이고 차원 높은 상호협력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매결연을 위해 우호교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할 필요가 있음(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 ※ 실제 국내 지방정부는 자매결연을 위한 우호관계를 선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 국가에 이중의 자매도시로서의 협력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 (국제교류의 영역 및 유형)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류유형 및 속성과 영역 등은 상이할 수 있으나, 기능적 속성을 중심으로 보면, 행정교류, 경제·통상교류, 문화·예술교류, 청소년 교류, 상징사업, 기타교류로 구분할 수 있음(김재근·서인석, 2012)
  - 행정교류 : 각 지자체 사이에서 양측의 직원을 교류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형태
  - 경제·통상교류 : 상대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개척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 문화·예술교류 : 지역주민에게 자매도시의 문화예술을 공유하여 양 지역주민의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
  - 청소년 교류 : 세계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교류나, 유학생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상징사업 : 거리명명식이나, 명예박사학위,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등의 활동
  - 기타교류 : 의료봉사활동, 동물교환, 재난 시 성금(원조) 등의 교류활동

<표 II-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유형

교류분야	교류내용
행정교류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근무, 공무원 연수, 시찰 조사단
경제·통상교류	경제교류협정체결, 지역기업진출 및 합작투자사업, 전용공단 조성, 무역센터건립, 산업시찰, 상품전시관 및 특산품 상설전시장 개관, 시장개척단 파견, 산업시찰, 상공회의소 간 자매결연, 중소기업연합회교류, 투자설명회, 관광전 개최, 기술이전 협의, 직항로개설
문화예술교류	민속축제참관, 합창단, 시립가무단 민속무용단 공연, 사진 및 그림 전시, 서적기증, 바둑 및 서예교류전, 국악연주, 민속품 시회
체육교류	스포츠 교류단 파견, 친선스포츠경기
청소년교류	청소년교류, 유학생교류, 장학금지급, 친선방문(홈스테이)
상징교류	상호공원조성, 한국정자건립, 거리명명식, 자매도시전시관 개관, 명예박사학위수여
기타교류	재난시 성금(원조), 의료봉사활동(초청진료, 무료진료 등), 동물교환(동물원)

자료 : 김재근·서인석, (2012)

## 2. 지자체 국제교류의 특징과 문제점

### ① 지자체 국제교류의 특징

-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교류와 비교하여 범위와 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제교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성태규·이재현, 2007)
  - 군사, 정치와 같은 주권을 매개로 한 기존의 외교방식보다는 친선과 친교중심의 민간외교를 중요시함
  - 지방의 주요 국제교류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의 국제교류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민족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주민의 국제사회 이해와 국제의식의 함양이 중요
  - 국제교류의 자원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문화 및 자연산업 관련자원이 중시되고 있음
- 김재근·서인석(2012)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특성과 수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 지자체의 국제교류(우호교류 및 자매교류)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류협력의 대상 국가 및 도시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우호교류의 대상국과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자체수는 자매교류수보다 많은데, 이는 자치단체장의 실적 쌓기 및 정치적 이벤트와 관련 있음
  - 2000년 이후 지자체들의 협력 대상국가가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미국의 도시들에 대한 교류협력의 비중이 높은 상황

### ② 지자체 국제교류의 문제점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8)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2007년까지 추진하였거나 계획된 모든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교류활동 유형, 교류활성화 및 부진사유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국제교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교류지역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
  - 원거리로 인해 교류 사업에 많은 예산과 시간 소요



- 엑스포 개최 등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자치단체장 등 특정인사가 국제교류를 주도
  - 상대교류지역의 소극적 자세
  - 국가적인 이슈(영토, 역사왜곡)의 영향
- 이정주 외(2013)는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15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교류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업무수행적 측면, 기타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는 시스템과 매뉴얼 부족(36.0%), 국제교류 자율성 부족(28.0%), 국제교류관련제도 미흡(16.7%),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14.0%)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
  - 운영적 측면에서는 다양성 및 지속적 교류 부진(32.7%), 예산부족(25.3%), 비효율적 추진방식(16.0%), 대상지역 선정(12.0%), 계획 및 준비부족(6.0%)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업무수행적 측면에서는 전문성 결여(48.7%), 외국어 능력 부족(16.0%), 국제교류 필요성 인식 결여(14.0%), 담당 공무원의 권한 미약(12.0%), 지방자치단체 지원 부족(7.3%)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타 측면에서는 민관협력 부족(58.7%),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20.0%), 단체장의 의지 부족(6.7%), 중앙부처의 형식적 교류(6.7%) 등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음
- 성태규·이재현(2007)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
- 구조적 측면에서는 언어능력을 구비한 전문가 부족, 국제교류 예산 부족, 외부협력체제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음
  - 기능적 측면에서는 불충분한 사전준비와 부진한 교류, 교류국가의 불균형, 저조한 주민참여, 정보 및 전문요원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3. 경상북도 국제교류 현황 및 주요사업

#### ① 경상북도 국제교류 현황

- 경상북도의 국제교류는 1984년 미국 오하이오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필리핀 북수리가오주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등 16개 국가의 25개 지역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자매결연은 9개 국가의 10개 지역과 체결한 반면, 우호교류는 12개 국가의 15개 지역과 체결한 상태임
  - 한 국가에서 복수의 주와 자매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터키, 프랑스, 베트남, 러시아 등 임
    - ※ 중국은 유일하게 2개 지역과 자매교류가 체결(허난성, 산시성)되어 있음
  - 자매교류 없이 우호교류만 체결한 국가는 호주, 몽골, 그리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폴란드, 필리핀임
    - ※ 일본의 경우 '89년 시네마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독도 문제로 2005년 단교하였음
- 경상북도의 국제교류는 2000년 이후 보다 활성화되었는데, 25개 지역 중 18개 지역은 2000년 이후 교류가 이루어짐
  - 자매결연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5개 지역과 체결되었으나, 우호교류의 경우 15개 중 2000년 이후 체결 지역이 13개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2000년 이후 국제교류는 우호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상북도는 러시아, 프랑스 등 아시아 이외 지역과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을 포함한 터키,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표 II-3>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결연 현황

유형	국가	지역	결연일자
자매교류(10)	미국	오하이오주	1984. 12. 5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1996. 9. 10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	1998. 9. 16
	프랑스	알자스주	1999. 4. 27
	터키	부르사주	2001. 9. 19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2005. 2. 21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2005. 2. 24
	스페인	카스티야이레온주	2005. 11. 8
	중국	허난성	1995. 10. 23
	중국	산시성	2013. 4. 5
우호교류(15)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2004. 9. 6
	중국	지린성	2015. 8. 30
	중국	후난성	2016. 5. 23
	그리스	아티카 지방 아테네시	1999. 4. 30
	러시아	연해주	2017. 6. 6
	몽골	울란바타르시	2007. 4. 22
	베트남	호찌민	2017. 12. 03
	필리핀	북수리가오주	2018. 1. 1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2013. 8. 1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	2008. 8. 23
	터키	이스탄불주	1999. 4. 29
	터키	이스탄불주 이스탄불시	2010. 12. 02
	폴란드	마조비아주	2009. 5. 14
	프랑스	아키텐주	2011. 12. 09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2007. 10. 7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2018)

## ② 경상북도 국제교류 조직

- 경상북도 국제교류는 일자리경제산업실의 국제통상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음
- 국제통상과는 국제통상담당, 국제교류담당, 국제협력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통상담당은 국제통상 시책 추진, 지역산업마케팅사업 지원, 경북통상 운영지원,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및 통상기반 구축 등의 업무 담당
  - 국제교류담당은 ODA사업, 국제교류업무 글로벌청소년 문화체험캠프, 해외지자체 공무원 한국어 연수사업, 대학교류지원 등을 수행

- 국제협력담당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지원, 국제협력기금, 해외인적 네트워크 관리,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운영, 국제교류협의회 업무 등을 수행

### ③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의 예산사업 중 국제통상 업무를 제외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대략 13개 정도임
  - 13개 사업 중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나머지 9개 사업은 경상북도의 국제적 관계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임
-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은 주로 행정교류와 문화교류의 형태로 진행
  - ‘국제행사회의 개최 및 참가’, ‘해외자매우호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 ‘외국 지자체공무원 초청 한국어연수사업’ 등은 행정교류의 유형으로 주로 공무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로 자매우호도시와 도내 청소년간의 쌍방향 문화교류, 도 문화자산의 자매우호도시 소개 등으로 구성
- 국제관계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은 문화교류, 경제·통상교류, 해외자문위원 활용, 관련 기구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아태지역 국가간 교류협력사업’, ‘실크로드권 국가간 교류협력사업’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대학생 등의 상호교류, 체육교류 등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북방초원도시 시장개척 및 교류협력사업’과 ‘해외통상교류 협력사업’은 경제 및 통상교류로 경제협력의 확대하고,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또한, ‘경북해외자문위원 운영’,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활동지원’은 해외 지역과의 직접적인 국제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나, 국제교류·통상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사업
  -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운영비’, ‘지방국제화업무지원 분담금’은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에 대한 지원 사업임

#### 4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 국제교류협력에서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국제교류담당을 중심으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개별 사업 위주로 진행함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전략성과 체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국제화 감각을 지닌 국제특화 전문 공무원이 부족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제통상과에 외국어 통번역과 관련된 임기제 공무원이 있으나,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은 다소 부족
- 자매우호도시와 관련해서 통상교류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리적인 교류 저조
  -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은 행정교류와 문화교류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경제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교류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교류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Ⅲ. 타 지역 국제교류기관 사례

### 1. 부산국제교류재단

#### ㉠ 설립개요 및 배경

- (개요)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시의 국제교류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2005. 11월에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2006. 2월 사무소 개소)
- (배경)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신속성,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 설립
  -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협력의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전담조직 필요
  - 민·관·학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국제도시로서 부산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전담하여 제고하는 조직 필요
  - 또한,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일본의 지역국제교류협회 운영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아 설립

#### <표 III-1> 일본의 지역국제교류협회 현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차원에서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역의 국제화는 행정기관의 국제화 활동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 국제교류 조직의 활동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li><li>○ 지역의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걸맞은 중핵적인 민간 국제교류 조직으로서 ‘지역국제화협회’를 설치하여 총무성에서 인정을 받아 지원 또한 받고 있음</li><li>○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회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나, 47개 전 도도부현에 설립이 되어 있고, 12개 정령지정도시에도 설립이 되어있음</li><li>○ 최근에는 시정촌 차원에서의 국제교류활동도 활발해져 시정촌이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국제교류협회도 2004년 현재 900여개 단체에 이르고 있음.</li><li>○ 크레아(지자체국제화협회)와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고유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li></ul> |
|-----------------------------------------------------------------------------------------------------------------------------------------------------------------------------------------------------------------------------------------------------------------------------------------------------------------------------------------------------------------------------------------------------------------------------------------------------------------------------------------------------------------------------------------------|

## ② 설립기반 및 연혁

- (설립근거) 재단은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음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

### <표 III-2> 부산국제교류재단 조례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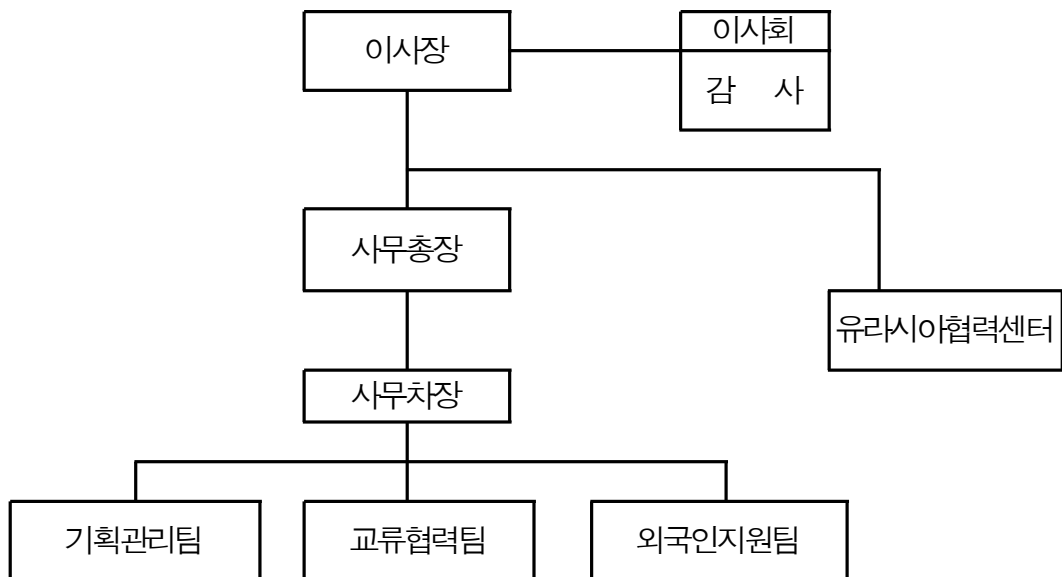
- (설립) 국제교류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사업)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 활동 지원 사업,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재산 조성) 재산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
- (보조금)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
- (사업위탁)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 (주요 연혁)
  - 2005. 6월 :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
  - 2005. 11월 : 외교통상부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
  - 2006. 2월 : 부산국제교류재단 개소
  - 2007. 1월 :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단체국제교류 지원사업 시행
  - 2008. 9월 : 자매도시 초청 부산 팸투어 시행
  - 2009. 3월 : 1577-7716 외국인콜센터 개소
  - 2011. 3월 : 부산글로벌센터 개소 및 사무처 이전
  - 2013. 5월 : 부산국제교류재단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
  - 2014. 6월 : 나가사키현국제교류협회와 우호교류협력 체결
  - 2015. 10월 : 외국인콜센터-부산시 120 바로콜센터 연계서비스 구축
  - 2016. 1월 : 유라시아 협력센터 개편 및 부산글로벌센터 확대

### ③ 기관 일반 현황

- (조직) 재단은 이사장 아래에 사무총장을 두고 있으며, 사무총장 아래에 사무차장을 두고 있음
  - (이사장) 당연직으로 부산광역시 부시장 중 부산광역시장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경제부시장이 담당하고 있음
  - (이사회) 5인 이상 18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 이사로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이 참여하고 있고, 선임직 이사는 국제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선임
  - (사무처) 재단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차장은 재단 업무 개발 및 기획총괄, 유라시아협력센터 업무 총괄 등을 수행하고 있음
    - ※ 현 사무총장은 ‘로이 알록 꾸마르’ (2015. 12. 10 임용)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로서 약 26년간 근무(2011. 1월 귀화)했으며 부산시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다양한 국제 관련 업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 (기구) 설립 당시에는 교류협력팀, 외국인지원팀, 한-러협력센터로 구성되었으나, 2011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총무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 기획관리실장을 사무차장으로 격상

<그림 III-1> 부산국제교류재단 조직도





- (인력) 재단은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팀별로 팀장을 포함해서 4~5명의 인력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2006년 설립 당시에는 부산시 직원 2명이 파견되었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총 10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음
  - 설립 당시 정원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10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4명, 2012년 20명으로 증원되었음

**<표 III-3> 부산국제교류재단 인력 규모**

(16.1.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관리팀		교류협력팀		외국인지원팀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	직원	팀장	직원	팀장	직원	센터장	팀장	직원
정 원	21	1	1	1	3	1	4	1	4	1	1	3
현 원	19	1	1	1	3	1	4	1	3	-	1	3

자료 : 부산국제교류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 (재무) 재단의 예산규모는 26억원 정도이며, 수입은 기타 수익금이 있으나, 대부분 부산시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출은 재단 고유 사업(교류협력사업, 외국인지원사업, 유라시아 협력사업 등)에 소요되고 있음

**<표 III-4> 부산국제교류재단 연도별 세입세출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세입				세출			
연 도	2015	2016	2017	연 도	2015	2016	2017
계	2,621	2,595	2,718	계	2,621	2,595	2,718
출연금	2,620	2,465	2,604	일 반 관리비	2,616	2,583	2,718
적립금 전입금	0	130	0	자 산 취득비	5	12	0
이월금	0		114				
기 타	1						

- 재단 설립 해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시 출연금은 매년 10억 원이었으나, 2009년부터 사업 확대 등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21억 원, 2017년에는 27억 원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었음

<표 III-5>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시 출연금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	출연금	연도	출연금
2005	1,000	2012	1,955
2006	1,000	2013	2,102
2007	1,000	2014	2,592
2008	1,000	2015	2,620
2009	1,100	2016	2,465
2010	1,500	2017	2,604
2011	1,655		

- 2005년 설립 당시 기본 재산 확보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음
- (시설) 2006년 설립 당시 시청사 내의 자매도시 전시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2011년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 13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당초의 공간보다 4배로 확대된 사무공간 확보
  - 부산글로벌센터 총 면적은 1,127㎡(340평), 전용 면적 580㎡(175평) 규모이며, 외국인 콜센터, 전문상담실, 교류라운지, 강의실, 교류실, 재단 사무처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 재단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활 편의와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센터 필요하였으며, 내·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시설 확충도 시급하다는 이유에 기인
  - 부산글로벌센터가 입지한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는 연제구의 부산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시청역)가 지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임

**<표 III-6> 부산국제교류재단 시설 현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상담 코너(135.3㎡) : 외국인 콜센터, 전문상담실, 기타 유학생 상담과 비즈니스 상담 시설</li> <li>○ 교류라운지(105.5㎡) : 국내외 신문과 잡지, 한국어 학습 서적, 국제교류협력 관련 자료 및 간행물, 인터넷 검색 코너, 위성방송 청취 코너</li> <li>○ 강의실1(47.5㎡) : 30명 정도 수용, 한국어 강좌, 세계문화교실, 국제교류협력 관련 특강 등</li> <li>○ 강의실2(36.5㎡) : 25명 정도 수용, 한국어 강좌, 세계언어교실 등 소규모 강의</li> <li>○ 교류실(67.3㎡) : 25~30명 수용,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 회의 및 교육 등</li> </ul> |
|---------------------------------------------------------------------------------------------------------------------------------------------------------------------------------------------------------------------------------------------------------------------------------------------------------------------------------------------------------------------------------------------------|

**4 주요기능 및 사업**

- 재단은 설립 초기에는 외국인지원과 시민국제화사업에 주력하였음
  - 2006년 재단 개소식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최우선 목표는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재단은 초기에 외국인지원센터로서 부산 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표명
  - 하지만, 이후 재단 규모가 커지고, 부산의 외국인 주민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국인 콜센터를 본격 가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저개발국 개발협력 및 ODA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부산시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추진

**<표 III-7>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사업**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li> <li>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기반 조성 및 통상 활동 지원사업</li> <li>3.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li> <li>4. 국제교류 관련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 개설 운영</li> <li>5. 국제교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li> <li>6.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전략 인재육성사업</li> <li>7.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수탁사업의 수행</li> <li>8. 기타 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
|-----------------------------------------------------------------------------------------------------------------------------------------------------------------------------------------------------------------------------------------------------------------------------------------------------------------------------------------------------------------------------------------|

자료 : 부산국제교류재단 정관 제4조

- 재단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기본적인 경영목표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 국제화사업 활성화’, ‘통상활동 지원사업 강화’, ‘외국인 주민 생활편의 지원확대’로 설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의 전략과제는 ①민간교류 및 원거리교류 활성화 ②부산형 개발협력사업(ODA) 추진 ③통일시대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기반조성 ④글로벌 일자리 창출 ⑤외국인지원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설정

<표 III-8> 부산국제교류재단 주요 사업 현황

전략과제	주요 사업	세부 사업
민간교류 및 원거리교류 활성화	시민중심 국제교류 확대	시민생활체육 교류 시민 문화교류
	공공외교 활성화	원거리 자매·우호도시 교류 자매·우호도시 행사지원 및 협력 BFIC 글로벌 포럼
	민간단체 지원 강화	민간단체 국제교류행사 공모 민간단체 국제교류 중개 및 지원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	청소년 교육방문단 교류 부산-중국 청년 프런티어 KF-BFIC청소년 희망커뮤니티 프로젝트
부산형 개발협력 사업(ODA) 추진	성과창출형 개발협력사업 시행	ODA관계자 국제초청연수 ODA기관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부산해외봉사단 파견 자매도시 시스터빌리지 조성
통일시대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기반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 교류 네트워크 확대 해외 경제통상 교류 지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반조성	유라시아지역 경제·문화 교류 지원 극동러시아 경제협력 강화 한-러 상호교류 활성화 유라시아 협력센터 운영
글로벌 일자리 창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지원	글로벌-UP 프로그램 인턴십 협력기관 발굴 국내외 인턴십 파견
	글로벌 청년 창업지원	해외 스타트업 위켄드 파견 스타트업 위켄드 부산 개최
외국인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외국인 상담서비스 제고	외국인 종합상담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생활적응 지원	웰컴레터 발송 한국어강좌 운영 외국인 부산사랑 경연대회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월간 소식지, 생활가이드북 발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유학생 유치 지원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유학생 취업 지원
	시민 세계문화 참여 확대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세계문화교실 부산글로벌서포터즈 운영

## 5 기타 : 애로사항 및 시사점

### ① 기관의 명칭과 위상

- 기관의 성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이사장을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고, 이사회에 부산시의 국장이 참여하는 등 재단 운영의 중요 의사결정은 부산시가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현재 이사장은 경제부시장이나, 기존에는 주로 행정부시장이 맡았음

### ② 대학위탁방안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시 국제교류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해서 설립하였기 때문에 부산시는 관련 업무를 대학에 위탁한 사례가 없으며, 재단에 대부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음

### ③ 네트워크 구축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16년, 2017년에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별 연수사업 위탁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음
  - KOICA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전수공유해 개도국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은 ‘이집트 지하철 운영역량 강화 과정’ 운영
- 또한 2013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지역센터와 함께 부산해외봉사단 등 부산형 ODA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음
- 지역 대학과 함께 유학생지원협의회 등을 발족해 해외에서 유학생 유치에 필요한 부산 홍보 및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2009년도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를 기념해 재단과 후쿠오카국제교류협회와 자매재단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의 상하이화하문화경제촉진회와 MOU도 체결하는 등 재단 자체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④ 경영수익사업 발굴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운영 및 사업비의 100%를 부산시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관계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축소 및 조직·인력 수급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수반되어야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을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재단의 성격이 비영리 공익법인임을 감안할 때 이윤 추구를 위한 영리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부산시의 재정 여건 또한 복지수요의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라 지속적인 재단 출연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
- 재단 내부적으로는 조직 및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매년 출연금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사업비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민·기관·기업 등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모집, 정부기관과 국제교류 관련 기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단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음
- 지속적인 기금 적립을 통하여 일정 규모의 적립금(약 200억원 추정)으로 “국제화 관련 복합 건축물 건립”을 통한 임대수입 및 보통재산의 이자수입 등으로 재단 고유의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으로 재단의 자생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⑤ 국제교류기관의 입지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시의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그와 함께 부산시 외국인 거주민의 생활 여건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음
- 또한, 재단 내의 외국인 콜센터에는 7개국 언어(한·영·중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법률·노무·부동산·비즈니스·유학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⑥ 기타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설립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이 미흡하여 사업의 시행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전미경, 2015)
- 이러한 문제는 부산시의 단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자체적인 비전과 전략에 의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 1] 설립개요 및 배경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및 2005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됨
- 홈페이지에 명시된 설립목적은 국제도시로서의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세부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음
  - 시민과 거주 외국인 간에 소통 및 교류 확대 외국인 지원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 제고
  - 시민의 국제교류 유도 및 지원 확대, 국제교류 중개 확대

<그림 III-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설립목적



자료: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dicc.or.kr>)

## ② 설립기반 및 연혁

- 2005년 1월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로 개원함
  - 개원 후 국제교류센터는 (사)국제교류문화원에 위탁하였으며, 156평 면적에, 340백만원 임차료(임차기간 3년)에, 주요 시설은 사무실, 휴게실, 모임방(Ⅰ, Ⅱ), 문화교실, 자료실, 인터넷 카페 등을 갖추
- 2013년 배재대학교에 센터 운영을 위탁함
  - 국제교류센터 영문을 “DIC: Daejeon International Center”로 변경하고, 로고와 슬로건을 제작함
  - 중국 북경 화가대학교와 교육교류 협력회의를 개최, 9월에 멕시코 콜리마 대학교와 교육교류 협력회의를 개최함
  - 대전 줌비 자선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고, 11월에 대전 국제 자선 베희시장을 개최하고, 베트남 호치민시·한국학센터 교류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시행함
  - 대전알리기 UCC 경연대회, 일본 삿포로 시청·국제플라자 상호 협력 실천 회의, 대전-하얼빈 경제·교육 시민대표 국제교류 협력회의, 대전광역시 시민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함
- 2014년 1월부터 소식지인 “It's Global Daejeon vol.1”을 발간함
  - 외국인 한복 무료 대여사업 개시, 시민·청소년 글로벌 스터디 그룹 개시(영중일베트남어), 『제2회 대전국제자선바자회』 개최, “It's Global Daejeon vol.2”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함
  - 『제6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 국제자선바자회』 개최함
  - 시민단체 국제교류지원 사업 2014 성과보고회 & 2015 사업설명회 개최, 자매도시 호주 브리즈번시와의 민간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문 등을 추진함
- 2015년 충남대 국제교류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및 대학생 교류 강화
  - 2015 글로벌 대전 대학생 포럼 환경과 세계의 젊은이들 개최, 2015 대전 유학생 담당자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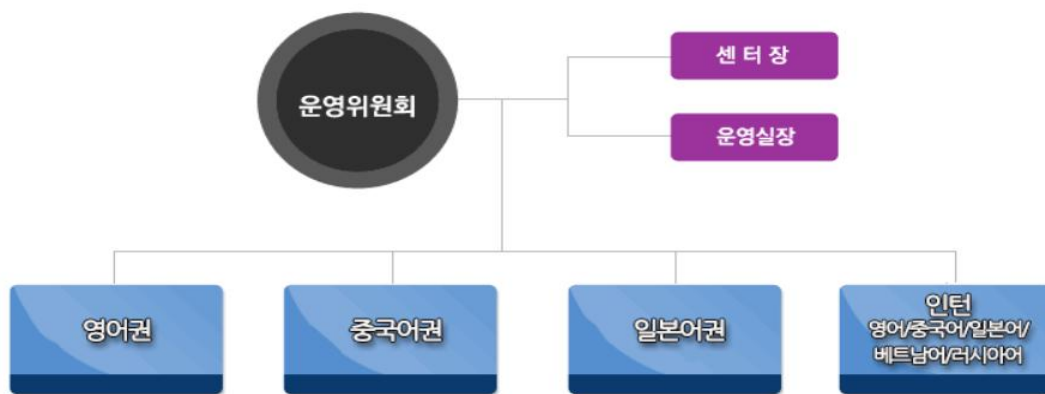
- 자매 도시 중국 심양 ‘국제우호도시 청소년 하계 캠프’ 참가 지원, 대전 시민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일본 시민단체 교류’ 업무지원
  -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국제교류센터 업무협약 체결, 대전 관내 대학 유학생 담당자 회의 개최
  - 한국어 교실, 튜터링 교실 & 시민글로벌 스터디 그룹 개최
- 2016년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강화
- 자선음악회 지원, 김장담그기/나눔행사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강화함
  - 전국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시민&외국인 우정쌓기, 유라시아 영화 문화콘서트 지원, 한국문화체험행사 지원 등을 추진함
  - 제8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 국제자선바자회 개최, 대전 시민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SEM’ - 라오스 루앙프라방 업무지원 등을 추진함
  - DIC서포터즈 1기를 발족시키고, 러시아 시베리아 홋카이도 센터 내 한국문화센터 개설 지원함

### ③ 기관 일반 현황

- (조직) 대전시 국제교류센터는 대전시 기획조정실 소속의 국제협력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대전시 국제협력담당관은 대전시의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하며, 국제교류센터 관련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 소속의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대전시 국제교류센터는 대전시 소속 사업소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이사회가 없으며, 운영위원회가 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센터장이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실행조직은 조직구조상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인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실행인력은 기획실장, 운영실장 이외에 인턴으로 구성되고 있음
- (인력)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도상 현재 5명이 부족한 상황임

-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2018년 현재 정규직은 4명으로 기획실장, 운영실장 이외에 2명을 충원할 계획임
- (재정)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재정은 대전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화기반구축 단위사업 중 민간위탁금(민간이전)으로 2017년 4.3억원이 편성됨<sup>1)</sup>
  - 동 예산에는 국제교류센터의 인건비(4명)과 사업비가 포함됨

<그림 III-3>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조직도



자료: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dicc.or.kr>).

<표 III-9>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인력현황

직책	현재인원	업무내용
센터장	1(비상근)	대전국제교류센터 총괄
기획실장	1(정규)	대내외업무 총괄 (기획)
운영실장	1(정규)	대내외업무 총괄 (운영)
담당자	0(정규)	-
담당자	0(정규)	-
영어 인턴	1(비정규)	통 번역 및 홍보
영어 인턴	0(비정규)	통·번역 및 행정지원
영어 인턴	0(비정규)	홍보 및 행정지원
중국어 인턴	1(비정규)	통·번역 및 행정지원
일본어 인턴	0(비정규)	통·번역 및 행정지원
베트남어 인턴	1(비정규)	통·번역 및 행정지원
합계	6	

자료: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dicc.or.kr>)

1) 예산 명칭은 “국제교류센터 운영”임

#### 4 주요기능 및 사업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센터의 미션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국제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임
-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 및 민간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함
- 동 조례에 따른 교류센터의 주요업무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외국인 편의시설 운영, 외국인 취업상담,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 및 편의 제공,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과 시민에 대한 국제화 지원, 시와 자매·우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민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음

<표 III-10>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주요업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li><li>2. 외국인 편의시설 운영</li><li>3. 외국인 취업상담</li><li>4.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 및 편의 제공</li><li>5.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li><li>6. 외국인과 시민에 대한 국제화 지원</li><li>7. 시와 자매·우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li>8. 민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li></ol> |
|---------------------------------------------------------------------------------------------------------------------------------------------------------------------------------------------------------------------------------------------------------------------------|

자료: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업무)

-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사업은 시민국제화사업, 국제교류사업, 외국인지원서비스, 국제화네트워크 구축 등 4개로 구성됨

<표Ⅲ-11> 대전시 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주요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의 내용
시민 국제화 사업	대전국제 자선바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자선바자회 : 150여개 시민과 외국인의 생활용품 베풀시장</li> <li>- 세계문화공연전 : 세계 각국 15개 팀의 신나는 문화공연</li> <li>- 세계음식체험전 : 세계 18개국의 원주민들이 뽑내는 맛의 향연</li> <li>- 세계문화체험전 : 15개 부스의 가족과 친구. 연인이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 체험전</li> <li>- 세계인 어울림 명랑운동회 : 푸짐한 경품, 재미와 즐거움이 넘쳐 나는 명랑 운동회</li> </ul>
	시민글로벌 스터디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어민과 함께 발음 및 표현 교정</li> <li>- 서로 다른 문화권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하는 장</li> </ul>
	DIC 대학생·유학생 서포터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역 대학생의 국제화 경험을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li> <li>- 대전지역 대학생·유학생의 봉사정신 함양</li> <li>- 유학생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내국인과의 교류 기회 제공</li> <li>- 대전시 및 대전국제교류센터 홍보와 청소년 국제화교육 선도</li> </ul>
국제 교류 사업	자매/우호 협력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국제교류 강화</li> <li>- 각 도시별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매·우호협력도시 간 실질적이고도 유효한 관계형성</li> <li>- 공공외교 포함,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한 대전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li> </ul>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소재 시민단체 및 동호회의 국제교류 지원</li> </ul>
	학교/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 중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지역 민간단체, 기관, 학교의 국제교류 중개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촉진과 활성화</li> </ul>
	대전·츠크바 청소년 과학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호협력도시 대전시와 츠크바시 간 청소년 과학교류 프로그램</li> </ul>
	한국어말하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슈에서 대전광역시장배 한국어말하기 대회</li> </ul>

주요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의 내용
외국인 지원 서비스	DIC 한국어 교실	-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운영
	한국어 캠퍼스 강좌	- 대전 관내 2개 대학교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 및 운영(배재대, 충남대)
	한복대여사업	-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 대전시민에게 한복 대여 서비스 제공
	대전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스포츠 교류를 통한 부족한 생활체육 기회의 장을 제공
국제화 네트워크 구축	유학생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외국인 지원 단체, 대학기관, 외국인커뮤니티와 정보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 - 대학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유학생 지원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생적 외국인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개발과 독려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보조금 지원 - 외국인 커뮤니티 구축 지원 - 외국인 커뮤니티 간담회

자료: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dicc.or.kr>)를 기초로 연구진이 재작성.

## ㉔ 기타: 애로사항 및 시사점

### ① 기관의 명칭과 위상

- 대전시 국제교류센터는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소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 있음
  -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대전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에 이루어지고 있음
-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실질적인 정규직인 업무는 기획실장과 운영실장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기관운영을 공익성, 전문성, 안정성의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문성은 보통이고,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대전시의 직속 조직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지만,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어 전문성이 지속될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임
  - 매 2년마다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조직운영의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② 대학위탁방안

- 대전시 국제교류센터는 매 2년마다 기관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대전 소재 배재대학교가 위탁운영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 2018년 현재 국제교류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대학교에 위탁할 경우, 지역 소재 유학생 유치관리에 강점을 지닌 반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교사,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다소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의 기관 설립이 유용할 것으로 평가됨

## ③ 네트워크 구축

- 무상 ODA를 담당하는 외교부,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제협력단(KOICA) 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유상 ODA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대외협력기금(EDCF) 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전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인건비 포함 4.3억원)을 기초로 주요사업을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전시와 국제교류관계를 구축한 자매도시(13개), 우호도시(17개) 등 30개의 자매·우호도시와의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음
- 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④ 경영수익사업 발굴

-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은 대전시의 “국제교류센터 운영”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은 창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향후 대전시 국제교류센터가 별도의 독립법인(재단법인)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자체수익원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⑤ 국제교류기관의 입지

- 현재 대전시 국제교류센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99”(주원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음
- 대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 지역 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 할 수 있음

### 3. 광주광역시 국제교류센터

#### 1] 설립개요 및 배경

- 광주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여타의 국제교류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근거를 둔 지자체의 출연금)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광주시민연대)에 의해 설립되었음
- 1999년 광주광역시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을 제안하고, 광주시민연대가 이를 수용하여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였음
-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를 위하여 설립하였음
  - 대학, 시민단체, 지방정부, 국제NGO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그림 III-4> 광주국제교류센터의 비전



자료: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gic.or.kr>)

-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미래 비전으로 4가지로서 지구촌 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광주,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교류, 청년이 꿈을 키워가는 세계, 그리고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로 설정하고 있음.

## ② 설립기반 및 연혁

- 1999년 6월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 설립
  - 광주광역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시민단체인 광주시민연대가 수용하여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함
  - 설립 초기에는 「광주시민연대」와 함께 사용하던 사무공간에서 간사 한명이 살림을 꾸리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어교실과 GIC Talk 등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였음
  - 국제교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공적인 일이 아니냐는 사회 인식에 일반시민 후원회원 확보도 쉽지 않아 2002년까지는 후원 회원이 매년 20~30명에 지나지 않았음
- 2002년 새로운 시작
  - 국제교류센터 사무실을 광주광역시 금남로 전일빌딩으로 이전하고, 센터의 영문명을 'GIC(Gwangju International Center)'로 변경하였음
  - 전담 간사 및 자원봉사 간사가 함께 일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점점 활기를 띠게 되고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던 지역영문잡지 'Gwangju News'를 전면 천연색으로 2000부씩 발행하였음
  - 또한 한국어학당은 3학기에서 4학기 체제로 규모를 확대하고, 2003년에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광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만들기 위해 '오월음악회'를 개최하였음
- 2011년 GIC 13주년
  - 2011년에 접어들어 간사 9명, 인턴 4명이 전임으로 근무하는 한편 상임이사 직제 신설 및 사업별 팀제를 도입하는 등 센터 내부 조직을 강화하였음
  - 회원 모집과 관리에 집중하기 위하여 '희망열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회원 및 기부 모집 기법을 벤치마킹하고, 희망제작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름다운 가게 등을 탐방하여 학습한 결과 회원수가 2010년 대비 2배(800명)로 증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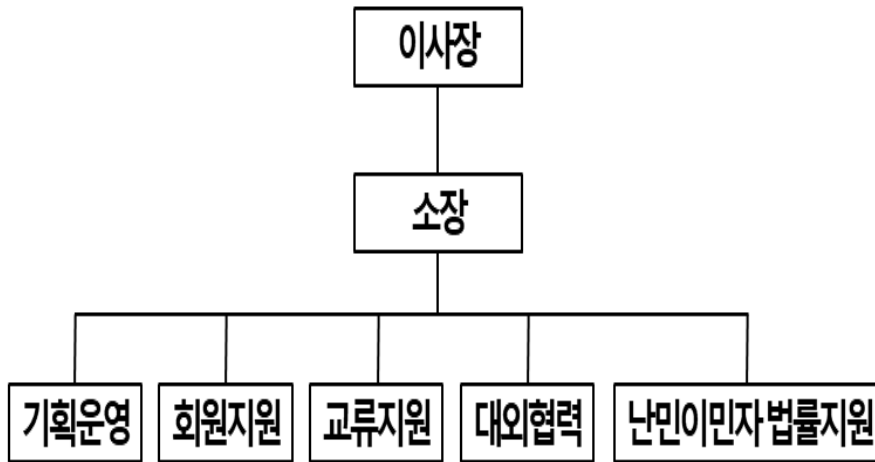
○ 2013년 GIC 15주년

- 늘어나는 회원과 다양한 외국인들을 위한 더욱 원활한 서비스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전일빌딩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5(삼호센터) 1~2층으로 이전하였음
- 현재 1층에 GIC홀과 글로벌라운지, 2층에 사무실과 도서실, 6개의 강의실, 한실방, 3층 물품보관실 등 300여평의 업무 공간에서 센터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교류센터가 국제교류의 허브로 성장하면서 활동업무의 영역 폭도 크게 확장되었음. Gwangju News는 56쪽 전면 천연색으로 월 4,500부씩 발행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답사 프로그램은 2011년 워렌과 함께하는 GIC 투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2000년 한국인 5명이 모여 영어토론 모임으로 시작했던 GIC Talk는 내·외국인 연사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공개 영어강좌로 발전하였음

### ③ 기관 일반 현황

- (조직)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의 국제교류센터로서 비영리민간단체임
  - 이사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 1명에 44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4명의 이사 중 4명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실행조직은 1소장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운영팀, 회원지원팀, 교류지원팀, 대외협력팀, 난민이민자법률지원팀 등임
- (인력)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인력은 소장을 포함하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4명의 팀장에 16명의 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4명은 외국인이나, 난민이민자법률지원팀은 간사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외국인은 통번역(감수), 영문 광주뉴스, GIC 토크, 청소년 세계이해 교육프로그램, 홍보, 언어교환, 영문 온라인뉴스센터, 중문 광주뉴스레이아웃, 후원회원(외국인), 난민 및 이민자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III-5> 광주국제교류센터 조직도



- (재정)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재정규모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16억 3천 9백여만원에 달함
  - 국제교류센터의 수입은 목적사업 수입, 목적사업외 수입, 기부금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됨
  - 목적사업 수입은 보조금사업, 위탁사업, 사업운영 등 12억 9천여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79.04%를 차지함. 목적사업 중에서는 위탁사업이 11억 4천여만원 (88.28%)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 목적사업외 수입은 광고, 통번역, 국내외 여행업, 행사대행 등 1억 1천여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6.89%의 비율을 차지함
  - 기부금 수입은 정기 기부금과 비정기 기부금을 포함하여 1억 5천 5백여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9.50%를 차지함
  - 전년도 이월금이 1천 3백여만원으로 전체수입의 0.82%를 차지함
  - 기타 수입은 차입금, 공간수입, 기념품 판매 등 6천여만원으로 전체수입의 3.74%를 차지함

<표 III-12>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세입예산(2016년)

구분		세입(원)	비율(%)
합계		1,639,246,770	
목적사업	소계	1,295,683,450	79.04
	보조금사업	93,376,600	
	위탁사업	1,143,823,970	
	사업운영	58,482,880	
목적사업외	소계	112,943,880	6.89
	광고	26,461,000	
	통번역	29,867,440	
	여행업	38,786,140	
	행사대행	17,829,300	
기부금	소계	155,801,900	9.50
	정기기부금	99,720,000	
	비정기기부금	56,081,900	
이월금		13,501,450	0.82
기타	소계	61,316,090	3.74
	차입금	-	
	기타수입	50,729,690	
	공간수입	2,488,100	
	기념품판매	8,098,300	

- 국제교류센터의 지출은 목적사업, 목적사업외, 경상운영비, 기타 등으로 구성됨
- 목적사업 지출은 국제교류협력사업, 인재양성사업, 청소년교육사업, 한국어 교실, 문화교실 등 약 12억 5천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76.23%를 차지함
- 목적사업외 지출은 기본사업, 수익사업, 국내외 여행업, 대행사업 등 4천 9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3.03%를 차지함
- 경상운영비는 인건비, 조직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3억 9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18.86%를 차지함
- 기타 지출은 차입금 상환과 이월금으로 구성되며 3천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1.87%를 차지함

<표 III-13>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세출예산(2016년)

구분		세출(원)	비율(%)
합계		1,639,246,770	
목적사업	소계	1,249,673,300	76.23
	광주국제교류의 날	23,601,630	
	국제교류협력사업	408,948,550	
	세계인권도시포럼	450,611,950	
	아시아문화포럼	197,270,990	
	오월음악회	20,115,500	
	인재양성사업	14,680,250	
	중소기업통번역지원	50,000,000	
	청소년교육사업	3,046,050	
	한국어교실	19,244,400	
	홈스테이	36,971,880	
	청소년희망커뮤니티	24,547,600	
	문화교실	635,000	
	목적사업외	소계	49,718,162
기본사업		3,080,822	
수익사업		6,487,750	
여행업		25,175,240	
대행사업		14,974,350	
경상운영비		1309,121,878	18.86
기타	소계	30,733,430	1.87
	차입상환	-	
	기타지출	5,157,280	
	이월금	25,576,150	

#### 4 주요기능 및 사업

-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주요사업은 크게 지구촌 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광주,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교류, 청년이 꿈을 키워가는 세계, 그리고 협력을 통한 지역 국제화 기여 등으로 구분됨
- 첫째, 지구촌 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광주의 경우 외국인 생활상담, Gwangju News, 광주생활안내책자, GIC 도서관, 통번역·공증관련 번역, 글로벌커뮤니티 지원, 유학생 지원 등을 포함함

- 둘째,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교류의 경우 GIC 토크, GIC 투어, 홈스테이, 5월음악회, 광주국제교류의 날, 글로벌 문화교실, 광주기념품 등을 포함함
- 셋째, 청년이 꿈을 키워가는 세계의 경우 자원활동가, 인턴십, 청년육성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함
- 협력을 통한 지역국제화 기여의 경우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특히 세계인권도시포럼, 아시아문화포럼, 한국국제교실실천네트워크 등과의 협력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함

○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III- 14> 광주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사업영역	주요사업	세부사업의 내용
지구촌 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광주	외국인지원	- 외국인 생활상담 - Kwangju News - 광주생활안내책자 - 한국어교실 - GIC 도서관 - 통번역·공증관련 번역 - 글로벌커뮤니티 지원
	대학생·유학생 지원	- 지구촌 친구 광주탐방 - 유학생네트워크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교류	시민국제화	- GIC 토크 - GIC 투어 - 홈스테이 Feel@Home - 5월 음악회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	- 광주국제교류의 날 - 글로벌 문화교실 - 광주기념품
청년이 꿈을 키워나가는 세계	청소년국제화	- 자원활동가 - 인턴십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협력을 통한 지역국제화 기여	국제협력네트워크	- 협력프로그램 - 세계인권도시포럼, 아시아문화포럼, 한국국제교실실천네트워크 등과의 네트워크



## ⑤ 기타: 애로사항 및 시사점

### ① 기관의 명칭과 위상

-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교류 전담기관이면서 그 형태도 차별적인 것으로 보임
  - 이사회를 둔 사단법인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됨
-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있고, 소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과 위탁사업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시 보조사업과 위탁사업 외에 비중이 높지 않지만 수익사업과 기부금 수입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있음

### ② 대학위탁방안

- 설립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였으며, 광역시의 출연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있어 광역시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설립된 지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조직, 전문 인력, 재정력, 그리고 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에 있어서 대학위탁 필요성과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또한 자생력을 갖추어가고 있고, 국제교류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고려할 때 지자체 출연의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도 높지 않음

### ③ 경영수익사업 발굴

-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목적사업으로서 보조금사업, 위탁사업, 사업운영 수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광고 수입, 통번역 수입, 국내외 여행업, 행사대행 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다른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과 달리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기 및 부정기의 기부금 수입을 확보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교류 전담기관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 출연의 재단법인 외에도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④ 국제교류기관의 입지

- 현재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삼호센터 1-2층)에 위치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청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 자동차로 15-16분 거리에 있으나 전철역(금남로4가역) 근처에 입지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임
-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사이에 위치하여 외국인 대학생의 이용편의는 높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에 반해 광주광역시 외곽에 입지한 광주하남 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그리고 광주평동 산업단지 등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있음

## 4.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 ① 설립개요 및 배경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및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 설립목적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라북도가 세계의 여로 도시와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외국인 거주여건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기 위함

### ② 설립기반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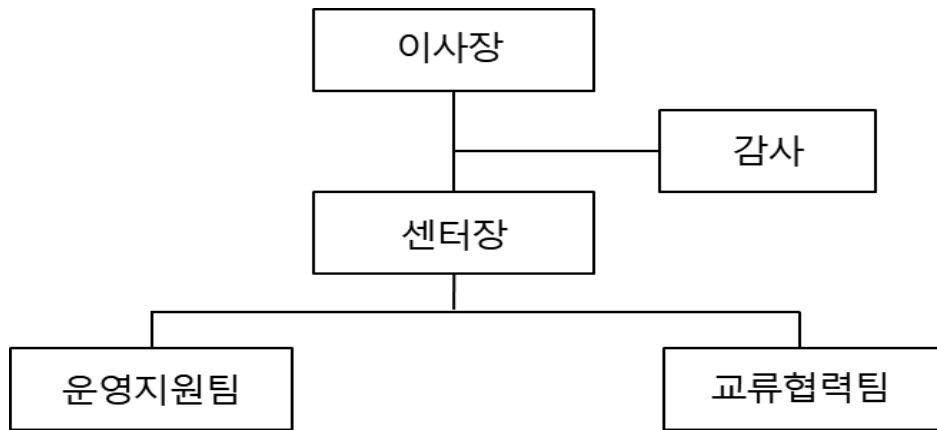
- 2015년 5월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6월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5년 7월 국제교류센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센터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종료하였음
- 2015년 10월 업무를 개시하고 11월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지만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이나 연구는 실시하지 않고 센터를 설립하였음.
  - 다만 수원시 사례를 참조하여 설립계획에 활용하였는데, 수원시 국제교류재단은 7명에서 출발하여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전북보다 약간 많은 편임.

### ③ 기관 일반 현황

- (조직) 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소속으로 되어 있음. 기관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부서형태로 되어 있지만 구성과 성격은 재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재단법인으로서 이사회가 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센터장이 이사의회의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이사장은 전라북도 경제부지사가 겸직하고 있고, 센터장과 2팀(운영지원팀과 교류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II-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조직도



- (인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2-3명 충원 계획임

<표 III-15>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력현황

구분	합계	직급별				
		센터장 (5급 상당)	팀장 (6급 상당)	대리 (7급 상당)	주임 (8급 상당)	사원 (9급 상당)
정원	7	1	2	1	2	1
현원	7	1	2	-	2	2

- <표I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급 상당의 센터장이 있고, 6급 상당의 팀장이 2명이며, 7급 상당의 대리는 공석이고, 8급 상당의 주임이 2명이며, 9급 상당의 사원이 2명임
- (재정)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100%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며 매년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설립 당시 1억원의 기금 출연에 매년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III- 1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예산규모(2016년도)

(단위: 천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구분	예산액	구분	예산액	
합계	1,088,266 (100.0%)	합계	1,088,266 (100.0%)	
사업수입 (출연금)	1,066,000 (98.0%)	영업 비용	소계	594,000 (54.6%)
자본적 수입 (순세계잉여금)	22,266 (2.0%)		인건비	309,028 (28.4%)
			경비	284,972 (26.2%)
		영업외비용	22,266 (2.0%)	
		지원사업비	462,000 (42.5%)	
		예비비	10,000 (0.9%)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10억 8천만원의 예산 중 영업비용은 5억9천4백만원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음
- 영업비용 5억9천4백만원 중 인건비는 약 3억9백만원으로 28.4%이고 경비는 약 2억8천5백만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제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2016 회계연도 재무상태는 자산 512,974천원, 부채 74,343천원, 순자산 438,63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은 당좌자산 264,543천원, 유형자산 71,902천원, 무형자산 69,571천원, 기타 비유동자산 106,958천원 등으로 구성됨.
  - 부채는 유동부채 72,201천원, 비유동부채 2,142천원인데, 총 부채의 97%가 사고이월액 및 12월말에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포함한 미지급금 및 예수금이 고 당해 연도 수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환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부채는 없음
  - 순자산은 법인 정관에 의거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설립 이후 지자체의 출연금 및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 시설물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있으며, 면적 3실 439㎡임

- 주요 시설을 보면, 사무실은 센터운영실(센터관리 및 사업 운영)과 상담실(외국인 상담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장은 내부 교육, 사업회의, 유학생홍보단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수용인원은 24명임
- 자료정보실 및 다용도실은 자료정보실 구축 및 운영, 도민과 외국인 소통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4 주요기능 및 사업

- 센터의 미션은 민간교류 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전북에 대한 인식과 이해 도모이고, 비전은 세계속의 전북을 열어가는 국제교류 활성화이며, 그에 따라 경영목표는 ‘도민 글로벌 역량강화로 민간 교류활성화’, ‘전북 알리기를 통한 전라북도 국제화 제고’, ‘외국인 커뮤니티 강화로 친 전북 외국인 양성’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센터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①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확대 ② 도민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③ 외국인 및 유학생 생활기반 지원 강화로 설정하고 있음
- 센터의 경영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가지로 압축될 수 있음

**<표 III-17>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주요 사업**

1. 환황해권 중심도시 전북 건설을 위한 국제 민간교류 지원사업
2.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유학생 유치 관리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서포터즈단 운영
5. 해외 전북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
6.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교류 등의 사업 지원
7.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협력기관 등과의 연계사업

- 2016년도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도내 청소년 교류 및 외국인 지원, 국내외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도민글로벌 역량강화사업, 외국인·유학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도내 청소년 교류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해 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음
  - 국내외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 지원위원회 구성, 국제교류행사 개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를 통한 영문 전북소개자료 배부, 한미중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음
  -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으로 UN기구와 외교부 견학 및 모의유엔회의개최, 국제교류서포터즈 행사 지원 등을 실시하였음
  - 외국인·유학생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학습교재 제작, 외국인봉사단 운영, 외국 대상 찾아가는 무료한방서비스, 외국인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실시하였음
-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확대, 도민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외국인 및 유학생 생활기반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센터는 외국인 관리 및 정부여건 개선, 도민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 민간교류 활성화(자매우호지역 발굴 및 관계 개선), 14개 시군 국제교류실천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 등. 현재 15-16개 사업(세부사업을 포함하면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부하가 높은 편임.

## 5 기타: 애로사항 및 시사점

### ① 기관의 명칭과 위상

- 기관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센터로 두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음
  -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중요 경영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센터는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이러한 성격에 맞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사장을 경제부지사가 겸직하고 있으나 통상협력과의 통제를 받는 구조임
  - 전북개발연구원 등의 경우 이사장은 도지사가 맡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의 통제하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기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향후 경상북도의 국제교류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재단법인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기관의 위상도 대구경북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대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② 대학위탁방안

- 센터는 대학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으며, 대전의 경우 배제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역선도대학과의 연계는 한국어 대학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은 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
- 그러나 대학교의 경우 주로 유학생 유치관리 및 외국에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 등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음
  - 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교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따라서 경상북도의 국제교류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는 대학 위탁대안보다는 도출연의 재단법인 형태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③ 네트워크 구축

- 외교부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공공외교법>에도 지역의 국제교류기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지자체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 않음
- 한국국제교류재단(KOICA) 등과는 연계가 다소 있음
  - 지역문화공연(외국공연단)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지역할당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물론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있는 편임.
- 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시군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관심도 낮음



- 회의 차원의 모임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지원기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
- 즉 주요 관광지와 축제(14개 시군)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행태를 보임
- 또한 전주, 익산시 등 규모와 역량을 갖춘 자치단체에서 자매우호도시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법과 대안에 대한 문의와 자문을 해오고 있음
- 경상북도 국제교류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시군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시군이 관심을 갖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KOICA 등의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외교부와 행안부 등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임

#### ④ 경영수익사업 발굴

- 국제교류센터의 수익사업이 미약한 편임. 지방의회에서는 자체수입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매년 예산심의 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10년차에 접어든 부산시의 국제교류재단의 경우 KOICA로부터 수익사업의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
- 센터의 과제는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임
  - 우선 출연금의 경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그 다음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도의 국제협력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 경상북도 국제교류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도 페이그 원칙(pay-as-you-go)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⑤ 국제교류기관의 입지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청 근처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도청 근처에는 대학(전주대, 전북대, 비전대)이 있고, 도민들(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유엔대회 등)의 접근성이 용이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다소 거리가 멀지만 주로 주말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음.
-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도 도청, 대학생,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대학생(외국인 대학생 포함) 및 도청과의 접근성을 중시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를 선택해야 할 것임

## 5. 국내사례의 시사점

### ㉠ 국제교류재단의 규모관련 시사점

- 사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의 규모를 비교하면, 설립 검토 중인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규모 설정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전라북도 등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III-18>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 규모 비교

구분	조직	인력(명)	예산(백만원)
부산시	3팀 1센터	19명	2,718
대전시	3권역	4	430
광주시	1소 5팀	21	1,639
전라북도	2팀	7	1,088

- <표 I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설립 20년차 및 10년차가 된 광주시와 부산시 국제교류센터를 제외하면 1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정규모도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21명의 인력과 16억여원의 재정규모를 지니고 있고, 부산시 국제교류센터는 19명의 인력과 27억원의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국제교류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담당해야 할 사업의 범위와 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는 10 ~ 13명 정도의 조직규모로 출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다만 새마을국제화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화기능에 역점을 둘 경우 15-20명 규모로 출발할 수 있고, 국제교류센터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량 그리고 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가야 할 것임

## ② 주요 기능관련 시사점

- 현재 경상북도는 ODA사업, 글로벌청소년 문화체험캠프, 해외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사업, 대학교류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기능과 사업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4개 지자체 국제교류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기능 및 사업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I-19>와 같음

<표 III-19> 4개 지자체의 국제교류기관 기능 비교

구분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전라북도
국제민간교류(체육 및 문화)	○	○	○	○
공공외교 활성화(자매·우호)	○	○	×	○
민간단체 지원 강화	○	○	○	○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교육방문)	○	×	○	×
ODA 사업 추진	○	×	×	○
주민국제화(이해증진 및 글로벌역량)	○	○	○	○
글로벌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	×	×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	×	×	×
글로벌 청년 창업지원	○	×	×	×
외국인 상담 서비스	○	○	○	○
외국인 생활적응 지원	○	○	○	○
외국인 유학생 지원(유치 및 취업)	○	×	○	○
세계문화 참여(문화교실, 서포터즈)	○	○	○	○
통번역·공증관련 번역	×	×	○	×
글로벌커뮤니티 지원	×	×	○	×
홈스테이	×	×	○	×
협력프로그램(문화포럼 등)	×	×	○	×

- 4개 시·도의 사례를 비교하면, 기관의 형태와 역사 그리고 규모에 따라 기능과 활동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관 설립 10년차를 맞은 부산시는 국제민간교류, 공공외교(자매, 우호), 외국인 상담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비즈니스 네트워크구축, 글로벌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기관 설립 20년차를 맞은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커뮤니티 지원, 협력프로그램, 홈스테이, 강좌와 토크, 문화투어, 음악회 등 생활밀착형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출연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임
-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대전시와 전라북도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활동가 모집, 인턴십, 홈스테이, 국제교류 토크 및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사업범위를 설정할 때 어디까지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재 도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상협력 기능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 기능까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조직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

### ③ 국제교류기관의 형태관련 시사점

- 대전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2개 시도의 사례는 자치단체 출연의 재단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대전시는 시의 사업소 조직(국제교류센터)으로 설립하여 2년마다 위탁 운영하고 있음. 그에 따라 대학(배재대학교)에 위탁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2018년부터 시의 출연기관(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주시는 출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광주광역시에는 보조금과 위탁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대학에 위탁 운영할 경우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예상됨
  - 대학위탁 시 기대되는 장점으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절감, 국제화네트워크 사업 추진 용이,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 보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 등에서 유리함
  - 그에 반해 단점으로는 지자체의 정책의지 투입 곤란 및 추진동력 약화, 경제통상 등 다른 도청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미흡, 주인-대리인 관계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태 및 거래비용 증대, 그리고 유학생 외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교사,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상대적 관심 저하 등이 예상될 수 있음

- 광주광역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적고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 등 국제교류센터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각종 문화토크, 글로벌커뮤니티 사업, 기부금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글로벌 일자리 창출, 통상협력 등 지자체의 기능과 전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의 국제교류기관은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그리고 통상협력 등 도청의 유관사업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도 출연의 재단법인으로 설치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4 국제교류기관의 입지관련 시사점

- 4개 시·도 국제교류기관의 입지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과 다문화 가족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시청 주변 전철역 근처에 입지해 있고, 대전국제교류재단은 대전역 근처에 입지해 있음
  -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시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전철역 주변에 입지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단지역보다는 대학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음
  - 전라북도는 현재 공단지역 주변에 입지해 있으나 외국인 대학생의 접근성 곤란을 이유로 도청 근처로 이전할 계획임
-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 도청, 대학생,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일상적 활용수요가 큰 대학생(외국인 대학생 포함) 및 도청과의 접근성을 중시해야 할 것임
  -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려한다면 공단지역 주변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지역이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면 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현재 경상북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등을 포함한 외국인 수를 보면 다음 <표 III-17>과 같음

<표 III-20> 경상북도 시·군별 외국인 수(2016년)

구분	인구수	외국인 수	시·군	인구수	외국인 수
합계	2,700,398	51,351	의성군	54,014	708
포항시	516,775	5,255	청송군	26,301	251
경주시	259,452	9,476	영양군	17,713	216
김천시	142,256	1,998	영덕군	39,052	921
안동시	168,798	1,335	청도군	43,564	1,039
구미시	419,891	5,601	고령군	34,257	1,812
영주시	109,247	1,040	성주군	45,205	1,681
영천시	100,521	3,092	칠곡군	123,199	4,131
상주시	101,799	901	예천군	46,166	522
문경시	74,702	655	봉화군	33,539	270
경산시	258,037	8,449	울진군	51,738	1,236
군위군	24,171	616	울릉군	10,001	145

- 지역별 분포를 보면, 포항·경주권(포항, 경주, 영덕, 청송 등)이 15,903명이  
고, 구미·김천권(구미, 김천, 칠곡, 성주 등)이 13,411명이며, 경산·영천권(경  
산, 영천, 청도, 군위 등)이 13,196명으로 나머지 시·군 지역의 외국인을 합쳐  
도 8,941명에 그치고 있음
- 외국인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고려하면, 포항·경주권, 구미·김천권, 경산·  
영천권 등 세 가지 지역으로 압축할 수 있으나, 경북지역의 특성상 대구지역  
의 외국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구지역은 26,4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주로 경상북도와 접하고  
있는 달서구(8,619명), 달성군(5,317명), 북구(4,847명), 서구(2,474명)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표 III-21> 대구시 구군별 외국인 수(2016년)

구분	인구수(명)	외국인 수(명)
합계	2,484,557	26,493
중구	79,712	785
동구	351,352	1,788
서구	199,507	2,474
남구	156,433	1,124
북구	440,383	4,847
수성구	447,011	1,539
달서구	591,891	8,619
달성군	218,268	5,317

-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 때 포항·경주권보다는 구미·김천권, 경산·영천권이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주로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역에서 접근 대표성이 확보된 지역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미, 경산, 영천 등에 위치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됨

**<표 III-22**

**> 경상북도 시군별 대학 및 대학생 수(2015년)**

구분	대학수	대학생 수
합계	19	171,371
포항시	2	7,315
경주시	3	20,047
김천시	1	4,942
안동시	1	10,166
구미시	2	15,528
영주시	1	6,535
상주시	1	1,831
경산시	7	102,894
칠곡군	1	2,100

- 대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상북도는 2015년 현재 171,371명의 대학생이 있으며 60%에 해당되는 102,894명이 경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임
  - 그 다음 경주시 20,047명, 구미시 15,528명, 안동시 10,166명, 포항시 7,315명 등으로 나타남
-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기준으로 8,300여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산 4,133명, 경주 1,606명, 포항 779명, 김천 498명, 구미 268명, 안동 177명 등이 체류하고 있음<sup>2)</sup>
  - 외국인 대학생에 대한 교육과 한국화 등의 기능을 고려할 때 대학 및 유학

2)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정부 공동데이터포털([www.data.go.kr](http://www.data.go.kr))의 유학생관리정보 데이터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임



생이 밀집한 자치단체에 국제교류재단을 입지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IV.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 타당성 검토

### 1. 법적·제도적 타당성

####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내용 검토

- 동법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는 지자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sup>3)</sup>
-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 동법 시행령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음

#### ② 관련법에 따른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의 설립

-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31-97조)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함
- 구체적인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

3)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표 IV- 1> 경상국제교류센터(가칭) 설립 절차

- ①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경상북도는 발기인으로서 재단법인의 운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함
- ② 발기인총회 : 재단법인은 사원(회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함
- ③ 서류의 제출 : 총회의 의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임원 명부, 발기인명부, 재산출연증서, 기타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 ④ 허가증 수령과 설립등기 : 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을 수령하고, 주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

### ③ 경상북도의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에 대한 재산 출연

-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인 경상북도가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하나, 민법(31-97조)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가 필요 없음
- 경상북도는 설립자로서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에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증서를 작성해야 함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등기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처분가능하며, 최소규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④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 경상북도는 설립자로서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함<sup>4)</sup>
- 동 조례에는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의 ① 설립 목적, ② 주요 업무와 사업, ③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④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경상북도는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의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함<sup>5)</sup>

## ㉔ 법적·제도적 타당성 종합

- 경상북도는 국제교류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으로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가 동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민법(31-97조) 등에 기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실질적으로 동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정출연금 규모,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 등과 관련된 타당성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됨

---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2. 사회적 타당성

### ① 국제교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기관 설립 필요

- 지자체 국제교류는 ‘언어, 인종, 이념, 체제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간에 우호적으로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옴
-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상호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창출하고,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
- 지자체들은 행정교류, 경제·통상교류, 문화·예술교류, 청소년 교류, 상징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총 51,351명, 대구시에 26,493명 등 경북 및 대구지역에 총 77,844명의 외국인과 2017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8,300여명의 외국인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해외 지자체와의 국제교류업무를 체계적·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하부사업조직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② 현행 경상북도 국제교류 추진체계의 한계

- 경상북도의 국제교류사업은 일자리민생본부 산하의 국제통상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통상과는 국제통상담당, 국제교류담당, 국제협력담당으로 구성됨
-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의 예산사업 중 국제통상 업무를 제외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대략 13개 정도이며, 이중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나머지 9개 사업은 경상북도의 국제적 관계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임
- 국제관계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은 문화교류, 경제·통상교류, 해외자문위원 활용, 관련 기구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그러나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화 감각을 지닌 국제특화 전문공무원이 부족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③ 타 지역 국제교류사업 추진기관 사례분석을 통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 본 연구에서 부산, 대전, 광주, 전북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교류 및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산시는 재단법인인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팀 1센터의 하부조직에 19명의 인력과 약 27억 원의 예산을 통해 국제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전시는 재단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시청 조직과 별도로 ‘대전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정규인력과 약 4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광주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광주국제교류센터’를 통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조직은 소장을 포함하여 21명의 인력과 2016년 기준으로 약 16억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라북도는 재단법인인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11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별도의 전문성을 지닌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국제교류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그리고 통상협력 등 도청의 유관사업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4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본 연구의 사회적 타당성 이외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경제성 분석에는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 설립의 적합성 동의 여부, 동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동 센터 설립을 주민복지 증진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sup>6)</sup>
-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비용과 수입을 분석하는 재무적 타당성은 수익성지수법(PI) 과 순현재가치법(NPV) 을 이용하여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

6) 또한 관련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3. 이론적 타당성

#### ① 재단설립 이외의 대안 모색

- 경상북도가 출연기관인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1) 도청 사업소 조직으로 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 2) 신설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 3) 기존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 4) 민간기관에 국제교류사업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도청 사업소 조직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은 경상북도가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소로 경북국제교류센터를 개소하고,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임
- 신설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을 통한 사업 추진은 경상북도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임
- 기존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운영은 경상북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 국제교류사업을 위탁하는 방안임
- 민간기관 위탁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임

#### ② 대안별 타당성 검토 : 공익성/전문성/안정성/실행가능성 기준

- 경상북도가 사업소 조직으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직접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공익성은 우수할 수 있으나,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설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은, 경상북도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공기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우수할 수 있으나, 공익성이 다소 떨어지고, 실행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sup>7)</sup>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실적으로 국제



- 기존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운영은 경상북도 산하의 새마을세계화재단 등을 통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공익성을 떨어질 수 있으나, 안정성과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sup>8)</sup>
-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법인 또는 민간 단체에 관련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전문성에는 강점이 있으나,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사업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공익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sup>9)</sup>

### ③ 공익성/전문성/안정성/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재단법인 설립이 가장 우수함

- 앞에서 검토한 여러 대안 중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경상북도가 사업소 조직을 통해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 그러나 경상북도가 사업소 조직으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공무원을 통해 직영하는 방안은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은 안정성과 공익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님
- 반면 경북국제교류센터(가칭)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도 높고, 공익성, 전문성, 안정성 모두 우수한 대안인 것으로 평가됨

---

교류센터 경상경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8) 전문성은 새마을세계화재단 등이 보유한 전문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음
- 9) 본 연구의 사례 중에서 광주시 및 대전시가 채택하고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표 IV- 2> 경상북도 국제교류사업 추진주체의 대안별 비교

기준	대안1 (사업소 직영)	대안2 (재단법인 설립)	대안3 (민간위탁)
실현가능성	○	○	○
공익성	○	○	△
전문성	×	○	△
안정성	×	○	×

주: ○ 우수함, △ 보통, × 미흡함.

# V.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 방안

## 1. 설립 기본 계획

### ㉠ 기본 방향

- (목적) 경상북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의 국제교류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청 내 하위조직이 아닌 별도의 기관 설립
  - 특히, 국제교류 업무의 지속가능성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 운영 필요
- (명칭) 기관의 명칭은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가칭)’으로 명명
  - ‘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은 ‘센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조직 내에 하위 센터를 두는 경우를 고려하여 재단으로 결정(간결한 명칭으로 ‘경북국제교류재단’ 고려 가능)
- (형태)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가칭)’ 설립은 국제교류 업무의 체계성·효율성·지속가능성·안정성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대학 등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도 출연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
  - 국제교류는 타 분야와 달리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위탁 방식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신축성을 지니면서 공공부문의 지속성, 신뢰성 및 재원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므로 도에서 설립하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 형태가 타당
- (방식) 재단 설립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 (1단계 : 2019~2022) 기존의 도 국제교류 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고, 지방공공외교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조직으로 출범
    - ※ 중앙정부는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외교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외교부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지정하여 종합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에서도 공공외교위원회 구성과 함께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에서 지방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V-1> 경상북도공공외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위원회)** 경상북도 공공외교 활동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경상북도공공외교위원회’ 설치
- **(주요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1. 경상북도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도민 참여 및 만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1. 위원장 : 경상북도지사
  2.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3. 민간 위원 :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상북도지사가 위촉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공공외교 추진기관)** 공공외교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을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 수립 지원, 경상북도공공외교위원회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법적 근거 마련)** 위원회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별도 조례보다는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2단계 : 2023~ )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지원 업무를 별도의 산하 센터로 확장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도의 국제화 관련 기구들을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도의 국제화 거점기관으로 성장

## ② 설립 절차

- (설립 근거) 재단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경상북도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자체 출연의 재단법인 설립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V-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조례)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기존 국제교류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칭)’의 제정을 추진
  -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설립(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재단의 재산(출연금 등) 및 운영재원(보조금 지원 등), 시도에서의 사업 위탁, 공유재산 무상 사용 혹은 대부 등을 담고 있음

- 다만,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재단의 임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반면, 전라북도 조례는 조례에 임원과 이사장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라북도에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표 V-3> 부산광역시 및 전라북도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설립)
제3조(설립)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임원 등)	제4조(사업)
제5조(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임원)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7조(정관)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운영재원)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세입·세출승인)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2조(운영규정)

주 : 양 지자체 조례는 붙임 1·2 참조

- (설립 준비) 도청 내 법인 설립준비 T/F팀을 구성하여 법인 설립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국제통상과 국제교류담당에서 수행
  - 운영사무실 위치 및 규모 등을 결정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 정관 및 제규정 작성, 발기인 구성, 설립허가 및 등기의 절차 등을 거쳐 설립허가를 받음
  - 법인 운영을 위한 직원을 채용 이후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초기 단계에 법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무원 파견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V-4> 재단법인 설립 절차

재단법인 설립 단계	주요 내용
재단법인 설립준비	1) 설립자 재산출연 2)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결정 3) 정관 작성
재단법인 설립허가	4)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5)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6)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등기	7) 관할법원에 설립 등기

## 2. 1단계 사업 구상

### ① 비전 및 목표

#### ① 비전 : 경상북도 국제화 혁신 기관

- (기본 방향) 1단계에서는 기존 경상북도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지원 업무의 체계성을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비전 설정)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은 이러한 방향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화를 선도하고 혁신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재단의 1단계 비전을 ‘경상북도 국제화 혁신 기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② 목표

- (기본 방향)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도민의 국제 경쟁력 강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통해 비전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1) 국제교류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민간의 전문 인력을 통한 국제교류사업의 업무의 전문성 제고
  - 중장기적인 전략과 실리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 원거리 자매·우호지역 등과의 상호교류 확대 등으로 교류방식의 다변화 추진
- (목표 2) 도민의 국제 경쟁력 강화
  - 내·외국인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로 도민들의 세계문화 공유기회 확대
  - 도민과 민간단체 중심의 국제교류 확대
  - 민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목표 3) 외국인 거주자 지원체계 확립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제고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을 통해 학업 집중도 제고
  -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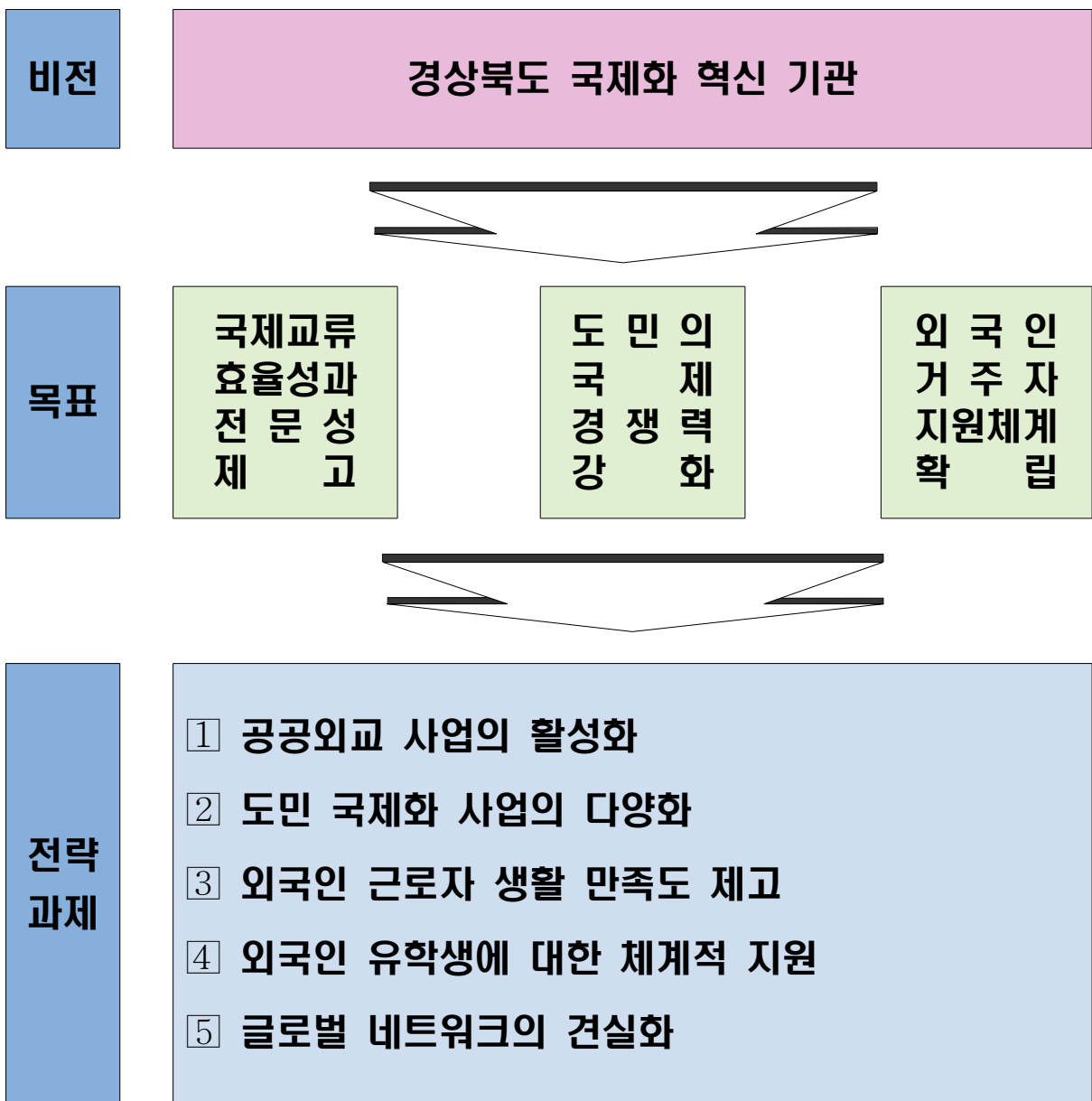


### ③ 주요 전략 및 사업(예시)

- (기본 방향) 재단은 비전과 목표에 따라 기존 도의 국제교류 업무를 고려하여 민간 재단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5대 전략과제를 통해 기본 사업을 분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략과제 1) 공공외교 사업의 활성화
  - 자매·우호도시 행사지원 및 협력
  - 각 도시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 외국 지자체공무원 초청 한국어 연수사업
  - 아태지역, 실크로드권 국가간 교류협력사업
  - 경상북도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 수립 지원
  - 경상북도공공외교위원회 지원
- (전략과제 2) 도민 국제화 사업의 다양화
  - 해외 자매도시 시민 간 상호 문화·체육 교류 사업
  - 해외 자매도시 행사 문화공연단 파견
  - 민간단체 국제교류행사 공모
  - 민간단체 국제교류 중개 및 지원
- (전략과제 3) 외국인 근로자 생활 만족도 제고
  - 외국인 근로자 상담서비스
  - 외국인 커뮤니티 구축 지원 및 간담회
- (전략과제 4)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서비스
  -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 도내 대학과의 유학생 유치사업 공동 전개
- (전략과제 5) 글로벌 네트워크 견실화
  - 유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 경북해외자문위원 운영
  -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활동지원

-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과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 국제화의 거점 기능을 확대할 필요도 있음
  - 통번역·공증관련 번역
  - 외국인을 위한 경상북도생활 안내서 발간 등

<그림 V-1>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비전 및 전략체계



## ② 조직 및 인력

### ①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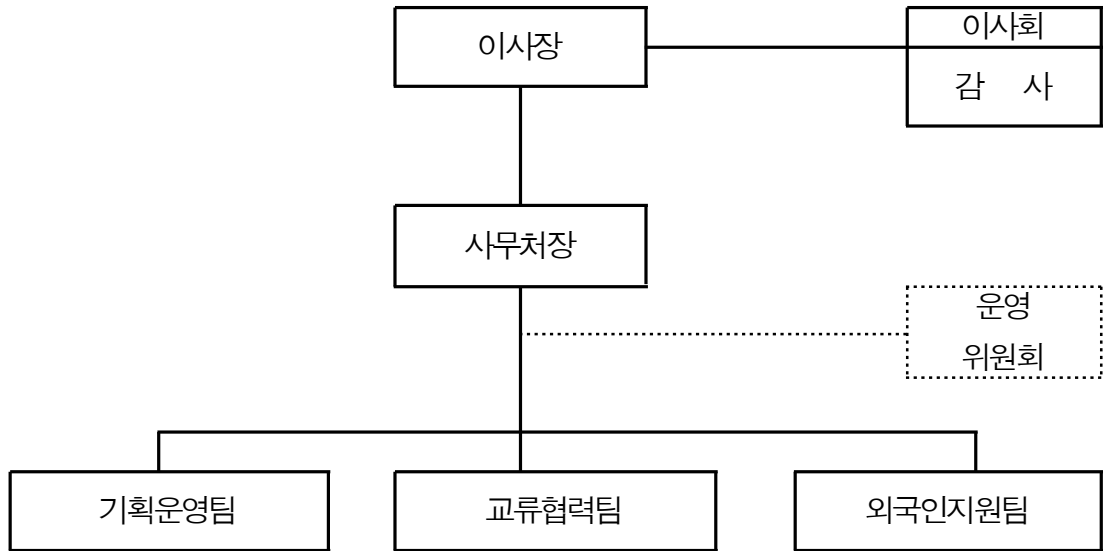
- (규모) 이사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
- (이사장) 경상북도 부지사 중 지사가 선임하는 방식으로 하되, 실제 타 지역의 사례와 도의 업무 분장 등을 고려할 때 정부부지사가 담당하는 방식 타당
- (당연직 이사) 도의 경제관련 국장, 문화관련 국장을 선임하고 국제통상업무 담당 과장은 간사로 참여
- (선임직 이사) 국제교류 및 협력, 외국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선임

### ② 사무조직 및 주요 기능

- (사무처장) 재단 업무는 사무처장이 총괄
  - 1단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부산 사례(사무총장 - 사무차장 - 팀장 - 팀원)처럼 4단계 보다는 3단계(사무처장 - 팀장 - 팀원)로 단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향후 2단계 계획에서는 인력이 보다 확대되고, 총괄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부산 사례처럼 4단계로 계층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운영위원회) 재단 업무의 효율성과 도청과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재단의 사무처장, 팀장, 도의 담당 사무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운영위원회에 도청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우 재단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팀 구성) 사무처장 아래에 기획운영팀, 교류협력팀, 외국인지원팀 설치
  - 기획운영팀은 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영평가, 이사회 운영, 회계 및 예산,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
  - 교류협력팀은 재단의 주요 사업 중 공공외교, 도민 국제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경상북도공공외교위원회 지원 등을 담당

- 외국인지원팀은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업무 담당

<그림 V-2>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조직 구조(안)



<표 V-5> 팀별 주요 업무

팀	주요 업무
기획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기획, 감사, 예산, 회계, 인사</li> <li>- 도의회 대응 및 이사회 운영,</li> <li>- 정관, 규정, 규칙 제개정 관리</li> <li>- 홍보, 경영평가, 홈페이지 관리</li> <li>- 국제교류 실태 및 통계 관리</li> <li>- 통번역공증관련 번역 등</li> </ul>
교류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관련 사업 전반</li> <li>- 도민 국제화사업 전반</li> <li>-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반</li> <li>- 경상북도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 수립 지원</li> <li>- 경상북도공공외교위원회 지원</li> </ul>
외국인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상담</li> <li>-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상담</li> <li>- 도내 대학 및 기관과의 외국인 거주자 관련 협력 등</li> </ul>

### ③ 인력

- (기본 방향) 재단 설립은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도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부산시의 경우 초기(2006년)에 10명의 인력으로 출범하여 2016년 현재 정원 21명(현원19명)으로 확대
    - 전북은 2015년 7명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2~3명 충원 계획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의 경우 1단계에서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팀별 4명 정도의 인력과 사무처장 1인을 합쳐 13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임
  - (직급별 인력)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직급체계에 따라 직급별 인력을 산정해야 하나,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받는 것을 고려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준으로 직급 산정
    - (사무처장)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
    - (팀장)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팀별 각각 1명씩 전체 3명 채용
    - (팀원) 팀별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 ‘라’, ‘마’급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1명씩 채용
- ※ 다만, 도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인력을 10명 정도로 출범할 경우 팀별로 차장, 과장, 대리는 각각 2명씩 채용

<표 V-6>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 정원 계획(명)

구분	합계	직급별				
		사무처장 (전문임기제 가급)	팀장 (전문임기제 나급)	차장 (전문임기제 다급)	과장 (전문임기제 라급)	대리 (전문임기제 마급)
1안	13	1	3	3	3	3
2안	10	1	3	2	2	2

- (인건비 수준)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고려하여 사무처장 8천만원, 팀장 6천만원, 차장 5천만원, 과장 4천만원, 대리 3천만원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V-7>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봉(2018년 기준)

구분	상한액(원)	하한액(원)
가		58,004
나	72,112	48,050
다	58,936	41,859
라	51,705	36,882
마	45,527	

### ③ 소요 예산

- (기본 방향) 재단은 도의 출연기관으로 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출범 및 1단계 사업기간 중에는 전적으로 도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설립 이후 10년이 지난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의 경우에도 시의 출연금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체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있음
  -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재산) 재단 설립시 1억원 출연
  - 부산은 별도 기본재산 없이 사업출연금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전북은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1억원 출연
- (사업출연금)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원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1안) 정원 13명 기준으로 15억원
  - (2안) 정원 10명 기준으로 13억 5천만원

※ 부산시와 전북도는 설립 당시 사업출연금으로 10억원을 배정하였으나,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사업범위가 부산시와 전북도의 초기계획보다는 다소 넓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15억원 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임

<표 V-8>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의 연간 사업 출연금 규모(1안 - 정원 13명)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세부 내역
합계	1,500	
인건비	620	- 사무처장 : 80 × 1명 - 팀 장 : 60 × 3명 - 차 장 : 50 × 3명 - 과 장 : 40 × 3명 - 대 리 : 30 × 3명
사업비	700	
일반운영비	180	- 일반수용비 - 전산사업비 - 공공운영비 - 운영수당 - 임차료 -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표 V-9>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의 연간 사업 출연금 규모(2안 - 정원 10명)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세부 내역
합계	1,350	
인건비	500	- 사무처장 : 80 × 1명 - 팀 장 : 60 × 3명 - 차 장 : 50 × 2명 - 과 장 : 40 × 2명 - 대 리 : 30 × 2명
사업비	700	
일반운영비	150	- 일반수용비 - 전산사업비 - 공공운영비 - 운영수당 - 임차료 -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주 : 전북도 2016년 인건비(7명) 지출 : 3억 1천만원 정도

- (시설비) 2019년 설립시에는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V-10> 연차별 자원 계획(1안 - 정원 13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총계	1,750	1,500	1,500	1,500	6,250
기본재산	100				100
시설비	150				150
경상비 및 사업비	1,500	1,500	1,500	1,500	6,000

<표 V-11> 연차별 자원 계획(2안 - 정원 10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총계	1,600	1,350	1,350	1,350	5,650
기본재산	100				100
시설비	150				150
경상비 및 사업비	1,350	1,350	1,350	1,350	5,400

#### 4 사무실

- (사무실 구성) 기본적으로 재단 사무처,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자료정보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산의 경우 재단의 인력도 20여명 정도이고, 외국인 콜센터 등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넓은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3실 439㎡임
  -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은 전북에 비해 인력도 다소 많으므로 최소 5실 500㎡ 이상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V-12>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사무실 구성(안)

구분	내용	관련 사진
교육실	한국어 강좌, 국제교류협력 관련 특강 등을 위한 공간으로 20~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p data-bbox="943 398 1310 432">&lt;전북 국제교류센터 교육실&gt;</p> 
상담실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한 상담을 공간  (※1단계 사업에서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소규모로 운영)	<p data-bbox="951 792 1302 826">&lt;부산국제교류재단 상담실&gt;</p> 
회의실	재단 내부 회의,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커뮤니티 회의 등을 위한 공간	<p data-bbox="951 1202 1302 1236">&lt;부산국제교류재단 회의실&gt;</p> 
자료정보실 (다목적실)	안내책자, PC 등을 구비하고 간단한 회의 및 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p data-bbox="916 1612 1337 1646">&lt;전북 국제교류센터 자료정보실&gt;</p> 

- (사무실 위치) 1단계 사업 규모(재단 인력, 사업 내용 등)를 고려할 때 기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재단의 주요 고객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주말에 이용하는 노동자들보다는 유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유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미, 경산, 영천 등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지역에 소재한 경상북도 관계 기관의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기대효과

-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공공외교 위한 전담기구 설립으로 국제교류의 전문성과 활성화 도모 가능
-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상북도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성과 고도화 도모
-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발굴 및 내실화가 가능하고, 민간영역의 국제교류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도민들의 국제화 의식 함양 등을 통해 경상북도의 국제화 수준 향상

### 3. 2단계 사업 구상

#### ① 기본방향

-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은 중장기적으로 자체 기능 확대, 도의 국제화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경상북도 국제화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자체 기능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등의 통상협력 지원, 글로벌 일자리 창출 기능 수행,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지원 업무를 별도의 산하 센터 확장을 통해 재단의 역할 범위 확대
  - (국제화 관련 기관과의 연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도의 국제화 관련 기구들을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도의 국제화 거점기관으로 성장
- 경상북도 국제화의 허브 기능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장, 소규모 컨벤션 시설, 게스트 하우스 등을 구비한 독립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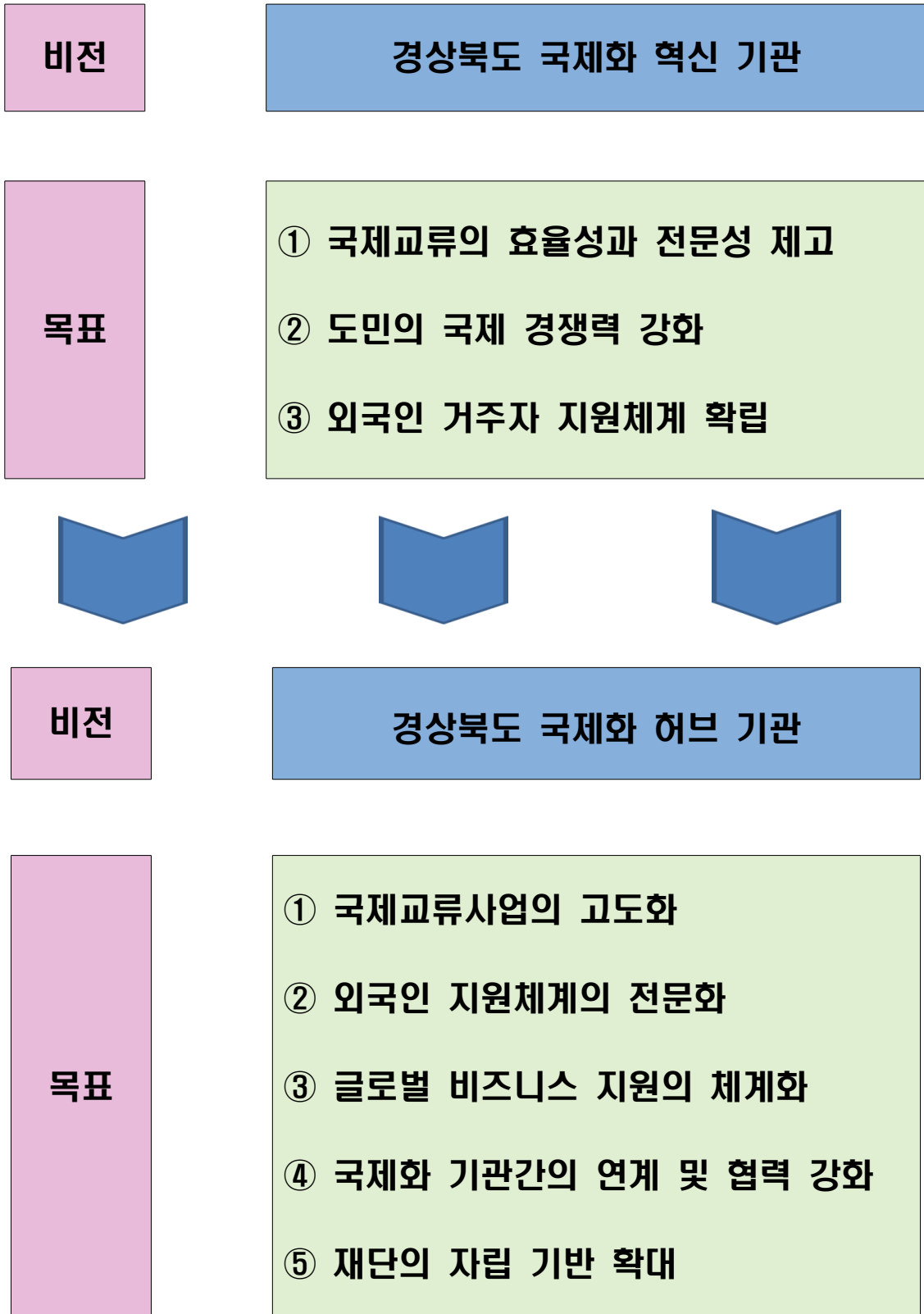
#### ② 비전 및 목표

- (비 전) ‘경상북도 국제화 허브 기관’
- (사업기간) 2023 ~
- (목 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교류 사업의 품질과 외국인 지원체계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의 창출을 지원하면서 경북도의 국제화 거점 기능 수행
  - (목표 1) 국제교류사업의 고도화
  - (목표 2) 외국인 지원체계의 전문화
  - (목표 3)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의 체계화
  - (목표 4) 국제화 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목표 5) 재단의 자립 기반 확대

### ③ 주요 기능 변화

- (목표 1) 국제교류사업의 고도화
  - 1단계에서 추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사업의 품질 개선
  - 국제교류 대상 국가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민간 교류를 확대
- (목표 2) 외국인 지원체계의 전문화
  - 1단계에서 확립된 외국인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외국인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외국인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직속기관으로 확대·설치하여 수요자의 근거리에 입지
- (목표 3)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의 체계화
  - 경상북도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위한 실질적 이익 창출
  - 글로벌 일자리 창출, 글로벌 청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통상협력의 창구 기능 수행
- (목표 4) 국제화 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재단 건물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도의 국제화 관련 기구를 집적
  - 재단이 경상북도 국제화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제화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목표 5) 재단의 자립 기반 확대
  - 재단의 도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을 축소하고, 재단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광고, 임대, 통번역, 행사 등) 사업 발굴·추진
  - 국제교류에 관한 자체적인 조사, 연구,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 재단 기능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모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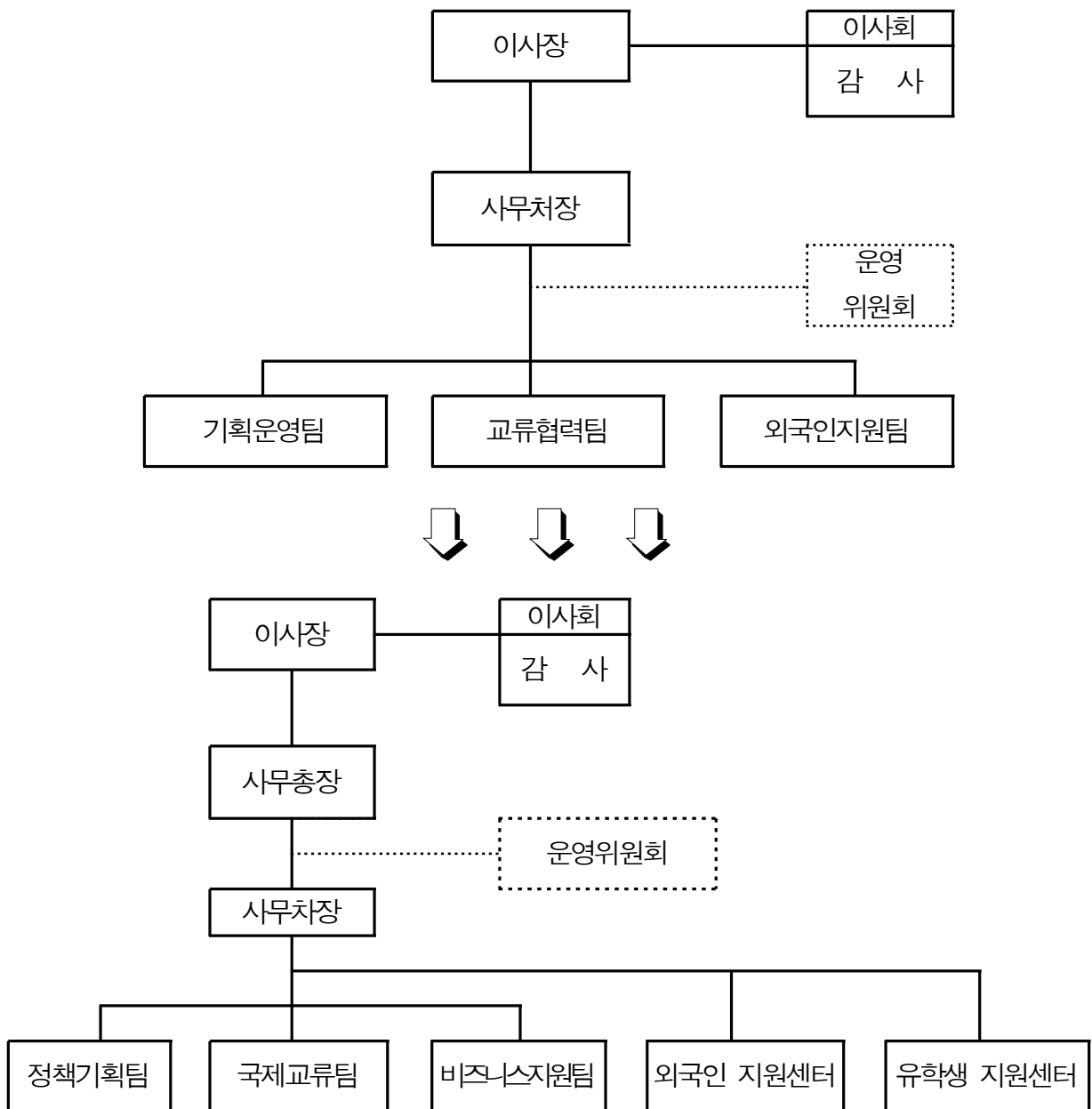
<그림 V-3>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비전체계 변화



#### 4 조직, 인력, 사무실 입지

- (조직) 경상북도 국제화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변화에 따라 조직 규모도 확대
  - (부서) 기존 3팀을 2센터 3팀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계층) 기능 및 조직 확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및 대외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장체제에서 사무총장-사무차장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림 V-4>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의 2단계 조직 구조(안)



○ (인력) 기능 및 조직 확대에 따라 인력도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하나, 도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2단계 사업 초기에 **외국인지원센터와 유학생지원센터**를 **입지적으로 분리된 센터로 구축**하고, 비즈니스지원팀을 신설할 경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각 어느 정도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추가 인력 : 사무차장 1, 비즈니스지원팀 3, 외국인 및 유학생 지원센터 3(기존의 외국인지원팀 4명에서 추가로 3명 확보 필요)

**<표 V-13>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중장기 인력 계획(안)**

구분	2019~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정원	13	20	20	22	22	24

○ (사무실) 경상북도 국제화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집적과 국제회의 및 소규모 컨벤션 등을 위한 공간을 보유한 독립 건물의 신축이 필요

-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분산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재단이 입주한 별도의 독립 건물에 집적시킬 경우 연계활동 등의 강화될 수 있음

- 독립 건물 신축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부지 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외국인지원센터와 유학생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인 구미, 경산 등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개설할 필요가 있음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필요성)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장기적인 전략성과 체계성이 미흡하고 국제화 감각을 지닌 국제특화 전문 공무원이 부족하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이 행정교류와 문화교류에 치중되면서 통상교류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리적인 교류 저조
  - 특히, 경북 및 대구지역에 8만여명의 외국인과 경상북도에 8,3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시급
  - 따라서 국제교류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인력을 중심으로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국제교류사업과 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필요 있음
- (설립 형태) 국제교류 업무의 체계성·효율성·지속가능성·안정성을 위해서는 도출연의 재단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면, 기관의 명칭은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 혹은 ‘경북국제교류재단’으로 설정
- (1단계 사업: 2019~2022) 기존의 도 국제교류 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고, 지방공공외교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조직으로 출범
  - (법적근거) ‘경상북도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칭)’ 제정
  - (설립준비) 도청 내 법입 설립준비 T/F팀 구성 혹은 국제통상과 국제교류담당에서 수행
  - (비 전) 경상북도 국제화 혁신 기관
  - (목 표) 국제교류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도민의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인 거주자 지원체계 확립
  - (조 직) 이사회, 사무처장, 운영위원회, 3개 팀(기획운영팀, 교류협력팀, 외국인지원팀) 등 구성



- (상근인력) 총 13명(사무처장 1명, 팀장 3명, 팀별 팀원 3명씩)으로 하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10명 정도로 출범 가능
- (소요예산) 기본재산 1억원, 사업출연금 15억원, 시설비 1.5억원
  - ※ 10명으로 출범할 경우 사업출연금은 13.5억원 정도
- (2단계 : 2023~ )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지원 업무를 별도의 산하 센터로 확장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도의 국제화 관련 기구들을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도의 국제화 거점기관으로 성장
  - (추진방향) 경상북도 국제화의 허브 기능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장, 소규모 컨벤션 시설, 게스트 하우스 등을 구비한 독립 건물 신축과 함께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광고, 임대, 행사 등) 발굴
  - (비 전) 경상북도 국제화 허브 기관
  - (목 표) 국제교류사업의 고도화, 외국인 지원체계의 전문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의 체계화, 국제화 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재단의 자립 기반 확대
  - (조 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팀장, 팀원 체계로 전환하고, 3팀 2센터로 확대(정책기획팀, 국제교류팀, 비즈니스지원팀, 외국인지원센터, 유학생지원센터)
  - (인 력) 2단계 사업 초기에 외국인지원센터와 유학생지원센터를 입지적으로 분리된 센터로 구축하고 비즈니스 지원팀을 신설할 경우 2023년에는 20명 정도의 인력 필요

## 2. 결 론

-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지방 자체의 공공외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국제교류사업의 전문적 수행에 대한 요구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경상북도국제교류재단’의 설립은 경상북도 국제화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설립 초기에는 경상북도 주도로 재단을 설립하고, 재정적 지원도 충분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재단의 기능이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다양한 민관간의 연계활동을 위한 중개자적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적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자생력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경기연구원. (2015) 경기도 국제교류기관 설립방안 연구
- 김재근·서인석.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409-438
- 김판석. (200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한국지방정부연구, 32: 5-31.
- 부산국제교류재단. (2016) 재단법인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10년사
- 성태규·이재현. (2007)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실태 및 활성화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 17-42.
- 이정주 외. (20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분석: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25-48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2007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백서

## 붙임 1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이하 "국제교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7. 31>

제3조(설립) 국제교류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제4조(임원 등) 국제교류재단의 임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1>

제5조(사업) 국제교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
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① 국제교류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타 수익금 등

②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재단이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09. 10. 28>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국제교류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1>

② 국제교류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5. 2. 25>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1>

제10조(운영규정)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7. 31>

## 붙임 2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사업
4. 기타 국제교류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도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센터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30>

② 이사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서 재단의 대표권을 갖는다.

③ 임원의 임면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30>

④ <삭제 2016. 9. 30>

⑤ <삭제 2016. 9. 30>

제7조(정관) ① 센터의 조직, 사업, 회계, 해산 등 센터 일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센터가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재원) ①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센터 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세입·세출 승인)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서 제출) 센터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겸임 또는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붙임 3

# 재단법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Jeollabuk-do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 교류센터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라북도가 세계의 여러 도시와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외국인 거주 여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교류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내에 위치한다. <개정 2016.10.07.>

제4조(사업) 본 교류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황해 중심도시 전북 건설을 위한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2.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획 운영
3. 유학생 유치 관리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서포터즈단 운영
5. 해외 전북 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사업
6.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 지원
7.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협력 기관 등과의 연계사업
8. 국제교류 관련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 운영
9. 국제교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10.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전략 인재육성 사업
11.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수탁사



업의 수행

12. 기타 교류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교류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② 제1항에 의한 임원중 센터장을 제외하고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0.07.>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0. 07. , 2017. 08. 02.>

1. 국제교류 민간단체 활동, 정부기관·학계·연구기관 등 국제교류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학생 유치, 외국인 지원, 문화·관광 기관·단체의 경력이 있어 해외 특화교류에 식견이 있는 사람
3. 각종 국제행사 지원 등 국제교류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도 국제협력업무관련 국장과 센터장으로 하며, 센터장은 센터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7. 08. 02.>

④ 감사 2인중 1인은 전라북도 국제협력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②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07.>

③ 임원 중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센터장추천위원회 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도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 08. 02.>

제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류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 08. 02.>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케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교류센터를 대표하고 교류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센터장의 궐위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라북도 소관부서 과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07. 28.>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의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교류센터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교류센터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기관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 구성) 교류센터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교류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이사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3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교류센터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교류센터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이사가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 ① 교류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교류센터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이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 등이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교류센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운영재원) 교류센터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

산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사업수입, 기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계연도) 교류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교류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류센터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교류센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23조(결산) 교류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① 센터장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7. 08. 02.>

② 센터장을 제외한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02.>

## 제5장 조 직

제26조(조직 및 기구) ① 센터의 직제, 정원,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임면) ① 교류센터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성과계약 체결) ① 도지사와 교류센터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중 채용되거나 출자 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다음연도 센터장의 보수 책정시에는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제29조(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관설치) 교류센터는 제4조에 의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운영) 교류센터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교류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교류센터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감독) 센터 업무에 대한 감독은 전라북도지사가 행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교류센터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6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정 이전의 인사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관계법령 및 전라북도의 관련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